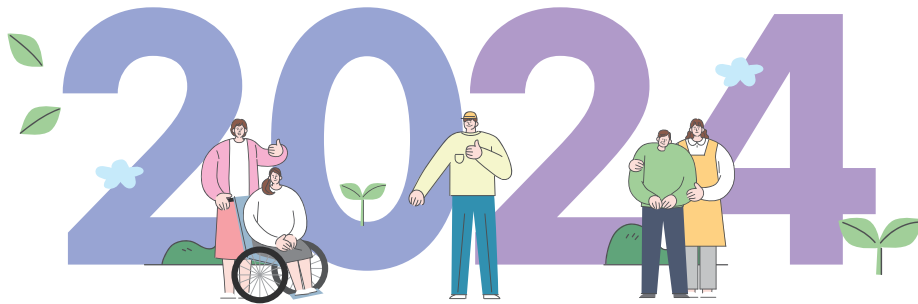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741-1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ART

제1편 시범사업 개요 / 1

I. 시범사업 개요	3
1. 추진 배경	3
2. 추진 개요	4
3. 주요 사업 내용	5
4.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6
5. 2024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7
6. 2023년 주요 추진현황	9
II. 추진체계 및 운영	10
1. 운영 모형	10
2. 추진체계도 및 수행 주체별 역할	12

PART

제2편 사업 운영절차 / 15

I. 시범사업 운영준비	17
1. 자립지원 체계 조성	17
2.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23
3. 지역 내 환경 조성 및 안전체계 구축	24
4.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
II. 사업 운영 절차	27
1. 자립조사	28
2. 단기체험 지원	37
3. 자립신청 접수	40
4.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동의	41

5.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43
6.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47
7.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사전 신청	48
8. 개인별 전환(이주) 지원	51
9. 대상자 모니터링	57

PART

제3편 행정 사항 및 지원 사항 / 59

I.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61
1. 시범사업 2024년 예산 개요	61
2. 세부 집행 기준	62
II.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협조	68
1. 시범사업 전문 교육	68
2.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70
3.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 등	71
III. 자립지원 관련 연계서비스	72

PART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 83

관련서식 및 부록	85
-----------------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5	○ (사업명) <u>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u> ○ (사업기간) '22년 ~ '24년(3년 차) ○ (사업 운영 주체) 시범사업 선정지자체 ○ (사업대상) '23년 총 400명(기존 200명 + 신규 200명) - ▲ <u>현재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u> ▲ <u>학대피해 쉼터</u> ▲ <u>단기거주시설 거주장애인</u> ▲ <u>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u> ○ (사업규모) 시범사업예산 +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구성 - 시범사업예산 '23년 9,438백만원	○ (사업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2년 ~ '25년 ○ (사업대상) 총 600명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 (사업규모) 시범사업예산 +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구성 - 시범사업예산 '24년 11,734백만원(국비+지방비)	사업대상 확대
13	〈신설〉	* 광역단위 사업 수행기관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운영 지원 등 • 대상자 발굴 협조 • 대상자 자립주택 확보를 위한 지원(LH 지역본부 및 지역공사간 협의) • 대상자 사업 전반 현황 보고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시범사업 평가 •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주체별 역할 강화
19~20	라. 시범사업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 (자격기준) (중략) - <u>채용기준을 준수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공고 후에도 지역 여건·환경 등 경력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준 조정</u> ○ (배치 및 보수기준) 대상자 4명당 1명, <u>사회복지사 4급 5호봉 기준급</u> -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배치 * <u>민관협력형-분리형의 경우 본사업 시행 이후 사업수행기관 인력 지원 검토</u>	라. 시범사업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 (자격기준) (중략)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1회차 채용 공고에 전담인력이 채용 되지 않는 경우 2회차 공고부터 2급 이상 자격소지자의 사회복지경력기준을 '1년 이상'으로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채용 가능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채용공고 후에도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경력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준 조정	채용기준 완화 및 처우개선 노력 등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장애인 4명당 제공인력 1명 배치, 단, 자립 초기 집중, 야간 지원, 장애 정도에 따라 배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u>지자체 예산</u>으로 인원 추가 배치도 가능 -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에는 <u>기본급제(4급 5호봉)</u>로 호봉 등 인정은 불가하며, 본사업 시행 시 호봉을 반영한 인건비 지원 검토 예정 *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보수체계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 <u>예산</u>으로 인원 추가 등 가능 <u>〈신설〉</u>	* 기 참여지역 중 전담인력 채용에 어려움(3회 이상 공고에도 미채용 등)이 있었던 경우, 1회차 공고부터 현재 채용된 전담인력 자격 기준 적용 가능 (중략) ○ (배치 및 보수기준) 자립대상자 4명당 1명, 사회복지사 4급 5호봉 기준 - 전담인력은 장애인 자립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고 대상자 장애 및 생활정도, 주말·야간 지원, 문서 처리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수행기관(제공기관)은 전담인력별 업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관리 필요(전담인력은 시범사업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수행기관(제공기관)은 전담인력 4명당 1명의 선임전담인력을 선정·배치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실무 운영 및 관리, 신규 전담인력 교육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선임 전담인력 선정은 자격 기준,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장의 추천으로 지자체가 승인하여 선정(전담인력이 4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에서 전담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선정) * 선임전담인력 수당 (월 10만원), 정액 급식비(월 10만원), 시범사업 1년 이상 근무자 대우수당(월 5만원) 등 제3편 행정 사항 및 지원사항의 예산집행 기준 참조	
24~25	<u>〈신설〉</u>	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 수립) (중략) (위급상황 대응 훈련)(중략) (주택안전 관리 점검) (중략) (보고 체계) (중략) (자립대상자 안전 교육) (중략) (전담인력 등 교육)(중략) (보험가입) (중략) (의료 지원체계 확립) (중략)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26	○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성) (중략) - 필수 참여 인원 : 지자체 공무원 1인, 자립전문기관 1인, 거주시설 관계자 1인,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1인 *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지역내 담당기관 포함 필요(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의료기관 등) * <u>광역단위 사업수행 시 대상자 거주 예상 지역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포함하여 구성</u> (운영 시기) - <u>분기별 1회 이상 개최</u>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위원회 기능 가능 - <u>대상자의 자립 지원 결정 시 담당공무원 필수 참여(지자체 최종 확인)</u> - <u>대상자 자립지원 결정 회의 등 대상자 자립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의 경우 서면회의 개최 불가</u> * <u>단순 사례지원 및 변경계획 사항 등은 가능</u> (위원회 역할) - (자립대상자 선정) <u>거주시설 장애인 중 자립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대상자 선정심의</u> - (개별전환 계획 검토) <u>퇴소과정과 개인별 전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 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필요사항 등 논의</u> - (모니터링 및 평가) <u>지역사회 전환 이후 대상자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사례관리 주기의 적절성, 지원서비스 활용, 만족도 등을 고려한 대상자 지원 강화(분기별)</u>	○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중략) - 지자체 공무원, 의료인, 사업수행기관장, 지역사회 전문인력, 권익옹호기관 담당자, 해당 시설관계자 등 (중략) * <u>위원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u> * <u>광역단위 사업수행 시 대상자 거주 예상 지역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자립하는 해당 시설관계자가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u> (운영시기)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u>시범사업 운영위원회 기능 가능</u>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시 시범사업 담당공무원이 필수 참여하여 자립 심의 과정을 확인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대상자 자립 심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는 대면회의로 운영 * <u>단순 사례지원 및 변경계획 사항 등은 서면회의 개최 가능</u> * <u>대상자의 상황 변화(건강상 문제, 법적 분쟁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립지원위원회 소분과 등 운영 가능</u> * <u>자립지원위원회 개최 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회의 운영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을 협조해야 함</u> (위원회 역할) - (자립대상자 심의) 자립지원위원회는 지자체(수행기관)가 준비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서비스 연계상황 및 지원유형 등의 적정성 심의 * (개인별전환 지원계획 검토) 자립 과정과 개인별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추가 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자립지원위원회 전문성(의료인 참여) 및 기능(소분과 운영) 강화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필요사항 등 논의 * (모니터링) 지역사회 전환 이후 대상자 정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례관리 주기의 적절성, 지원서비스 활용, 만족도 등 모니터링 참여	
28~33	가. 자립조사 ○ <u>(지자체 역할)</u> 수행기관과 함께 거주시설 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거주시설 등 협조 필요기관에 공문발송 및 안내 ○ <u>(자립조사 운영방식)</u> 지자체와 수행기관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기초 조사 실시 이후 심층조사는 2인 이상으로 진행 - (기초조사) 거주시설의 협조를 통해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모바일, 서면, 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심층조사) 2인 이상의 조사원을 구성하여 2:1(장애인) 대면 조사 ○ <u>(조사원 구성)</u>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공무원, 자립분야 전문가, 장애인 단체, 거주시설 관계자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성·운영 ○ <u>(자립조사 대상)</u> ①거주시설 장애인 ②학대 피해쉼터 ③단기거주시설 장애인 ④거주 시설 입소 대기자 - 거주시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선정 * 입소대기자는 시설 입소 적격판정을 받은 대상 ○ <u>(조사 운영시기)</u> - '22년 조사 대상자는 1월부터 '23년 신규 조사 대상자는 공모 선정 후 지자체에서 운영계획 수립 후 즉시 조사 실시 - 거주시설 등 대상자 지속 발굴을 위해 분기, 반기 등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진행 * 대상자 자립조사는 정기·수시로 조사 진행 추진 (중략) ○ <u>(조사 원칙)</u> -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거주시설(담당자)에서 기초조사 참여(모바일, 서면 등)	가. 자립조사 ○ (지자체 역할)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과 거주시설 등 협조 필요기관에 공문발송 및 안내 - 지자체는 읍·면·동장에게 시범사업 추진을 알리고 자립을 희망하거나 시범사업이 필요한 장애인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해당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시범사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진행해야 함 * 거주시설(장, 종사자)은 지자체(수행기관)에서 자립조사 추진 시 상담실 제공 및 종사자 조사 참여 등 협조 ○ (조사대상)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조사 추진 *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조사 진행(1-1시설입소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 발굴 및 조사 참조) - 자립조사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므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법적 근거, 정보 활용, 제공 범위, 목적 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 필요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	자립조사 절차 구체화 및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 추가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2:1 면담과 조사를 통해 자립육구확인 및 신체건강,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파악 - 자립조사원은 기초조사지를 참고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 - 조사 시 거주시설 관계자 및 담당 생활 지도원의 인터뷰 실시 - 거주시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가능 * 제3의 장소 : 시설 밖 카페 등 편안한 공간에서 면담이 이뤄져 이용자와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 필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ACC의사소통도구, 그림, 쉬운 단어, 동영상 등을 이용해야 하며 거주시설 담당 생활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서(서식3-1위임장) 활용(수정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 동의 관련 법령 참고 ※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신청(스스로 신청, 보호자 신청, 작권 신청) 관련 법령 참고 ※ 발달장애인법 상 ‘보호자’의 범위 참고 ○ (조사 운영시기) - 기존 참여 지자체는 '24년 1월부터, '24년 신규 참여 지자체는 공모 선정 후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실시 -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 지속 발굴을 위해 정기·수시로 조사 진행 추진 ○ (조사 운영 방식 및 원칙) - 전담인력 등 자립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조사 전 자립조사교육*을 이수 * 장애의 이해, 시범사업의 이해, 조사 방법 등 자립조사 관련 전문 교육(한국장애인개발원 실시) - 기초조사지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층 조사 실시 - 심층조사는 2(조사원):1(장애인) 원칙으로 자립 육구 확인 및 건강,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분야별 서비스 선호도와 필요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면상담으로 진행 - 자립조사 시 장애인 상담 외에도 보호자 및 담당 생활지도원과 상담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 - 심층조사는 거주시설(원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조사 가능 * 시설 또는 원가정 밖의 편안한 공간에서 면담을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AAC 도구, 쉬운 단어, 동영상 등을 활용해야 하며 이 외에도 보호자, 시설 담당 생활지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자립조사원은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층조사지 및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함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34	◦ (조사원 구성)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공무원, 자립분야 전문가, 장애인 단체, 거주시설 관계자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성·운영	◦ (조사원 구성)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공무원, 자립분야 전문가*,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성·운영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경험자, 시설(발달) 장애인 상담 지원 경험자 등 우선 구성	자립조사 관련 전문교육 보완
35	〈신설〉	◦ (조사원 교육) 수행기관은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구성된 자립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립 조사 운영과정 및 조사원 역할 등의 교육 추진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립조사 교육' 참여 및 수행기관 자체 교육 추진	
35	◦ <u>발굴대상자 관리(희망·비희망)</u> - (희망대상자) 상담이 완료된 대상자 중 최종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 위원회 상정, 전환지원 일정 등 준비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동의서, 서식7. 자립서비스 신청서 - (비희망대상자) 비희망 대상자 경우 해당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입하고 지역사회 전환에 대한 홍보 또는 자립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추진	◦ (자립희망자 발굴 및 관리) - (자립희망자)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목록화 하고 자립신청서 및 자립 지원위원회 상정, 전환지원 일정 등을 준비 - (자립 비희망자) 수행기관(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사유 등과 함께 자립비희망 장애인을 목록화하여 필요시 상담과 단기체험을 통해 자립의사 재확인	자립희망자 발굴 및 관리 강화
36	〈신설〉	1-1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발굴 및 지원 ◦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주택, 일자리, 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자립 서비스를 지원 (중략)	
37~39	〈신설〉	2. 단기체험 지원 ◦ (지원 목적 및 지원기관)(중략) ◦ (지원 대상)(중략) ◦ (기간 및 운영)(중략) ◦ (지원 절차)(중략) ◦ (지원 준비)(중략) ◦ (신청서 접수)(중략) ◦ (단기체험 대상자 선정)(중략)	단기체험 과정 신설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 수립 및 동의, 사업계획서 작성)(중략) ○ (단기체험 지원) (중략) ○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중략) ○ (고려사항) (중략)	
40	○ <u>(자립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u> 자립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등 서류 작성 * 서식3, 서식6, 서식7, 서식8 활용 - 충분한 설명과 당사자 욕구 및 동의에 기반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그림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립서비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대상자 선정 진행 시 자립의사를 반복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을 보류하고 자립의사 재확인 필요 ○ <u>(자립서비스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u> 의사가 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시범사업 안내와 설명을 진행했을 때 정서적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장애인에게 자립서비스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를 작성 * 의사가 불분명한 장애인 : 해당 장애인을 장기간 또는 장시간 관찰했거나 지원했던 사람으로 부터 '좋다', '싫다', '예', '아니오' 등의 긍정 또는 부정적 욕구, 생각, 표현 등이 눈빛, 행동, 언어 등의 다양한 표현도 어렵고 상대가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라고 인정한 경우 - 의향확인서는 의향을 확인한 자립지원 전문 인력 및 조사원 2인이 작성하고 서명	3. 자립신청 접수 ○ (자립신청 접수)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 및 단기체험 등을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참여동의에 기반한 자립신청 접수 - 자립 희망 장애인이 자립신청서 작성 시 자립의사를 반복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보류하고 자립의사 재확인 필요 ○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의사가 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시범사업 안내와 설명을 진행했을 때 정서적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장애인에게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를 작성 * 긍정·부정적 욕구('좋다, 싫다', '예', '아니오' 등), 생각, 표현 등을 언어적·비언어적(눈빛, 몸짓 등) 형태로 표현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장애인을 장기간 가까이에서 관찰 했거나 지원했던 사람(보호자, 시설종사자 등)의 의견 등 고려 필요 -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는 심층 조사 시 의향을 확인한 조사원 2인이 작성하고 서명	자립신청서 접수 및 개인별 전환지원 계획 수립 내용 구체화
41~42	○ <u>(개별전환 계획 회의 및 수립)</u> 발굴대상자의 자립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실시 - 자립조사, 보호자 상황점검 등 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발굴대상자의 개별 전환에 필요한 논의를 하고 협의하여 수립 * <u>전환이 필요하거나 의사가 명확하다고</u> 판단 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유형과 지원 사항 및 서비스, 제공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전환 계획에 대해 협의 및 조정	4.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동의 가. 계획 수립 및 동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을 희망 하는 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조사, 단기 체험, 보호자 의견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자립 신청 장애인의 개인별 전환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특히, 지역 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을 확인 및 협의 (중략) ○ (전환계획 수립 시 원칙) - 전환예정자와의 만남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신뢰 관계 형성 중요 -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 - 삶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 독립적 주거, 아파트, 살고 싶은 동네 지역 등 - 전환예정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안 - 전환예정자의 선택 내용과 선택 방식, 선택하는 환경과 맥락을 기록(고르기, 가리키기, 가져가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 등을 이해)	지원 계획 수립 * 전환이 필요하거나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 시 자립신청 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 유형과 지원 사항 및 서비스, 제공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에 대해 협의 및 조정 - 특히,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지역 내 제공 가능한 공적자원 및 민간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을 사전 확인하여 수립 (중략) 다. 계획 수립 유의사항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 신청 장애인의 통합적 접근 및 개별지원 관점의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정기적·수시적 상담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신뢰 관계를 형성 - 자립 신청 장애인의 삶의 주거선택지를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하도록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안 - 주거 형태, 장소 등에 대한 자립신청 장애인의 욕구 고려하여 수립 (중략) - 자립신청 장애인의 선택 내용과 선택 방식, 선택하는 환경과 맥락을 기록(고르기, 가리키기, 가져가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 등을 이해)	
43~46	○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 가.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거주시설 장애인 중 자립 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대상자 선정·심의와 퇴소과정과 개인별전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 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필요 사항 등 논의 - 자립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정도, 자립의사, 보호자 동의, 개별전환 계획서 검토 등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는 지역사회 전환 적정 여부, 대상자 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자립서비스 지원 유형, 지역전환 일정, 발굴대상자에	5.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가.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지자체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적정성,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상황, 지원유형 심의 등을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진행 시 조사 결과보고(기초, 심층), 단기체험 평가서 및 결과보고서, 자립 신청서(의향확인서),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등 심의 자료 등을 준비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자립지원위원회 인건 상정에 필요한 자료 및 회의 운영 지원	자립지원위원회 역할 및 운영 사항 개정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u>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등 적합성 논의 및 결정</u> -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 사용 가능한 자원 확인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진행 시 조사 결과 보고(기초, 심층), 개별전환 계획서, 자립 서비스 신청서(의향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포함하여 <u>안전상정</u>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진행 * 위원회 심의 시 부적정 대상자 선정 시 별도 결정 사유 등 보완 자료 필요 나. 대상자 선정 ○ <u>(대상자 선정) 당사자 의사, 지역사회 지원 여건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u> 시범사업 대상자선정 -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특정 장애 유형으로의 대상자 쏠림 등을 방지하여 다양한 사례별 자립과정을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u>자립지원위원회(선정 주체)를</u> 통해 대상자 선정 ○ <u>(대상자 선정 기준)</u> - 자립조사 분석 결과 등으로 심의 * 심의과정 중 추가 의견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개별 면접 진행 - 서비스 필요도 기준에 따라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으로 구분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진행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적정 대상자 선정 시 결정 사유 등 보완 자료 필요 나. 개인별 전환지원 계획 심의 - 자립지원위원회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자립 의사, 지역사회 지원 여건,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자립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 장애인의 자립욕구 및 의사 확인, 지역 사회 전환 적정 여부, 대상자 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자립서비스 지원 유형, 지역 전환 일정, 발굴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등 적정성 논의 및 결정 다. 지원유형 심의 - 자립지원위원회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및 특정 장애유형으로의 쏠림 등을 방지하여 사례별 자립과정을 다양하게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립 신청 장애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의 균형을 맞춰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 하고 서비스 선호도 및 필요도 기준에 따라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의 지원 유형 심의 (중략)	
47	○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종결 후 시범사업 자립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반드시 서면 안내하고(지자체) 보호자, 수행기관, 거주시설 등 인지가 필요한 대상도 안내 필요	6.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자립대상자를 선정 - 자립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자립 대상자 결정 안내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 하고 필요시 보호자, 수행기관, 거주시설 등에게도 안내 필요	
48	○ (급여 등 사전신청) 사회보장급여, 활동지원 등 사회보장서비스, 직업재활시설 참여, 후견인 지정, 건강주치의 연계 등 <u>사회복지 서비스 사전신청</u> - 보장시설 퇴소 2개월 전 활동지원서비스 사전신청·조사 가능	7.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사전 신청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서를 받은 즉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직업재활시설 참여, 후견인 지정, 건강주치의 연계 등	사회보장 급여 등의 사전연계 서비스 등 보완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사전신청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시설에서 자립 할 대상자의 공적 서비스 연계 시 시설 퇴소 전 연계 완료 추진 * 자립대상자 동의를 받아 공적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자립할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시설 전환 대상자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누락시 유선 연락 등 조치 필요) * 보장시설 퇴소 2개월 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전신청·조사 가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서,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 등 관련 사업 안내 지침 참조	
49	◦ <u>(장애재판정 확인) 시설 퇴소 시 장애재판정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장애 정도 상향 필요시 요청, 활동지원 자격책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의뢰 (후략)</u>	※ (장애재판정 확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사전 신청 등을 위한 장애재판정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중복장애 등록 및 장애 정도 상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격 책정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의뢰 (후략)	
51~53	6. 개별전환(이주) 지원 가.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중략) 나. 주거확보 (중략) 다. 주택 운영 및 관리 (중략)	8. 개인별전환(이주)지원 나. 주택 확보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LH), 지자체는 LH 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력하여 자립대상자의 주거 전환을 위한 주택확보·공급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교통부(LH) 협의 ① 시범사업 목표량(지자체 수요)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 (지자체 → 복지부 → 국토부(LH)) ② 지역별 주택 공급 결정 및 사용 협의(LH ↔복지부, 지자체) ③ 주택 사용 계약(LH↔지자체, 수행기관) ④ 자립(입주)장애인 선정(지자체) ⑤ 주택 입주 계약(수행기관↔ 자립(입주)장애인) ◦ 지자체와 LH지역본부, 도시(개발) 공사 등 협의	주택 공급 절차 구체화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지자체(수행기관)는 LH(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 -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목표량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 ① 시범사업 목표량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 (지자체 → 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② 지역별 주택 공급 결정 및 사용 협의 (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지자체) ③ 주택 사용 계약(LH지역본부↔수행기관) → 자립(입주)장애인 선정(지자체) ④ 주택 입주 계약(수행기관↔ 자립(입주)장애인) * 지자체는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주택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대상자가 거주할 임대주택의 계약 및 관리 등) 수행 능력을 고려 다. 주택 운영 및 관리 - 지자체(수행기관)는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입주하도록 계약 추진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대상자의 주택 계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 (무주택자, 소득기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추진 * 입주할 장애인의 정서적인 사유(단독 생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등)로 동거인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주택운영기관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개발)공사와 계약 후 대상자에게 제공 및 임대료 납부, 주택관리 등 주택 전반에 관한 사안을 관리 - 지자체(수행기관)는 지역적 상황으로 공공 임대주택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세자금 지원 등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주거 확보 (중략)	
54	○ (주거환경개선) 확보된 주거지를 장애유형·상태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응급안심벨 등 재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대상자 전환	라. 주거환경 조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확보된 주거지를 장애유형·상태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주거환경 조성 내용 구체화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예정일에 맞추어 공사 완료	시설 설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립대상자 전환 예정 일에 맞추어 주거 환경 조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 입주 전·후 주택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사업자(LH, 지역공사 등)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 경사로, ▲ 단차 제거, ▲ 미닫이문, ▲ 바닥 미끄럼방지, ▲ 세면대 및 싱크대 높이 조절 ▲ 소음차단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대상자의 안전과 보완장치가 필요한 경우 자립대상자와 상의하여 설치 (후략)	
57	○ (퇴소절차) 자립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 전환이 결정된 장애인의 거주시설 퇴소 절차를 모니터링하여 자립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설〉	가. 퇴소 절차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시범사업 대상자 중 거주시설을 퇴소 하는 장애인의 퇴소 절차를 모니터링 하여 자립 및 주거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략) 나. 사례회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의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 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시범사업에 적용(대상자 욕구, 필요 서비스 조정 등) 다. 상시 모니터링(방문 및 유선)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 주택 방문, 서비스 연계기관(일자리) 방문,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대상자의 만족도, 서비스의 적절성 및 연계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시설 장애인의 퇴소절차 모니터링 내용 추가
62~63	인건비 - 기본급 월 2,265천원 〈신설〉 - 월 20시간 초과 발생 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 〈신설〉	1.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인건비 - (기본급) 월 2,321,900원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사회복지이용 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4급 5호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책정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를 소지한	전담인력 처우개선 노력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경우 유사경력으로 80%인정 - (제수당)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적용하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인 전담인력 대상으로 지급, 기본급의 60%, 설, 추석 (연2회) * 가족수당 지급기준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등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고) * 가족수당 지급 제외 : 국고 또는 지방비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배우자의 근무 기관 정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사항을 분기별 확인 필요,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중략) - (시간외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대우 수당, 선임전담인력 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 월 최대 20 시간 지원, 단 자립대상자가 주택 입주 후 전담인력의 서비스가 지원되는 경우 (야간·휴일 지원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월 최대 30시간까지 허용(근로기준법 준수,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 시간외 수당 집행 시 시간외 근무계획 → 기관승인을 득하여 집행(대상자 긴급 지원으로 불가피한 경우 선 근무 후 승인) * 대우수당 지급기준 : 월 5만원, 시범사업 만 1년 근속한 전담인력 대상으로 근속된 날의 익월부터 지급 * 선임전담인력 수당 지급기준 : 월 10만원, 지자체의 승인(지정)을 받은 전담인력 대상으로 지급 가능(선임전담인력 선정은 전담인력 배치 및 보수 기준 참조)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정액급식비 : 월 10만원, 전담인력 정액 급식비 지급 - 퇴직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반환처리,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63	○ 사업비 : 인건비, 운영비 탄력적 예산 배정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편성 * ex)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활동 체험비, 주거마련 지원비 등 - (주거환경개선비) '23년 신규대상자 1인당 6,000천원 지원 • 도배·장판·경사로 확보 등, 다만 전·월세 비용 직접 지원불가 * 대상자 발굴규모 및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1인당 최대 6,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신설〉	○ 사업비 : 인건비, 운영비, 사업기 간 지역별 여건, 대상자의 규모,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배정 가능 - (주거환경조성) '24년 신규대상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 • 화재예방, 위급 시 대피용 설비 등 자립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의 설비 설치 및 집행(스프링클러, 방염벽지, 방염커튼, 소화기 등) • 주택임대보증금 납부, 자립 초기 생활필수품(가전, 가구, 주방용품 등) 구입 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되, 자립정착금(지자체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닌 장애인(재가 장애인 등)의 경우, 대상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등 내용 추가
64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대상자 1인당 월 80시간 월 1,245천원 • 지역당 1인 월 80시간 배정으로 총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모형 운영하며, 향후 소요예산 등을 분석하여 지원 시간은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 * 집중지원형은 최대 200시간을 넘지 못함 • (사업운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 받는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원서비스 연계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1명당 월평균 80시간 • 지역당 총 배정된 시간 내에서 지원모형에 따라 운영하되, 자립대상자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활동 지원시간의 탄력적 배정 가능(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 '24년 1시간 단가 16,150원 * 장애인 4명 기준 : (집중지원형) 1명 최대 200시간, (자립지원형) 3명 40시간, 1명당 월 평균 80시간 • 시범사업 대상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수급자격 대기자, 수급자격 불인정(판정 결과 탈락), 제외대상, 의료적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 단기체험 대상자 등 시범사업 추가지원 (중략)	활동지원의 탄력적 운영 내용 추가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추가로 활동보조·방문목욕·간호서비스 등 제공 • 모형별 지원(집중지원형, 자립지원형)을 통해 일상생활, 긴급상황 등 지원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통해 시범사업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연계(방문간호 및 장기요양 등 동일) * 대상자에게 매칭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자로 파견 받아 매칭(자격, 교육 등 인력 관리 책임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서식 활용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급여제공일정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제공 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지 등을 적극 활용 (중략)	
65	- (건강검진비) 대상자 1인당 400천원 • 신체 건강도 등에 따라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1인당 지원기준 미소진 시 추가 검진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 추가 비용지원 가능 •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병원급 19개소) 등과 연계	- (건강검진비) 대상자 1명당 40만원 •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으로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의 장애재판정, 서비스종합조사 등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 비급여 항목 의료비 등 검사항목 발생 시 비용지원 *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 하되, 기존 사업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검사비 지원 등) 그 차액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그 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과 연계	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내용 구체화
66	<신설>	○ (단기체험비 등) 활동지원서비스, 개별 단기 체험비, 주택 마련시 월세 지원 등 시범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후략)	단기체험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쪽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66	<u>〈신설〉</u>	○ (지도점검 실시) 지자체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결과보고 작성	지도점검 신설
68~71	<u>〈신설〉</u>	II. 시범사업 운영 지원 및 협조 1. 시범사업 전문교육 - 외부 기관 직무 관련 교육 및 자체교육 - 사회서비스 연계 및 법정업무 교육 - 자립조사 교육 2.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3.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 등	운영지원 사항 신설
105~178	관련서식 및 <u>부록 〈신설〉</u>	[서식7] 초상권 사용 동의서 [서식8] 단기체험 신청서 [서식9]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서식10] 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서식11] 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서식12] 단기체험 설문지(보호자용) [서식13] 단기체험 결과보고서 [서식21] 서비스 의뢰 요청서 [서식26] 사고보고서 부록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2. 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신청 관련 법령 3. 주택 관련 제도	참고 서식 신설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시범사업 개요

I.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2. 추진 개요
3. 주요 사업 내용
4.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5. 2024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6. 2023년 주요 추진현황

II. 추진체계 및 운영

1. 운영 모형
2. 추진체계도 및 수행 주체별 역할

I

시범사업 개요

I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필요성 증대

- '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회 비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에 관한 국내 이행상황 제출 의무화
 -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
-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주거선택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현 정부도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국정 47)로 채택하여,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을 추진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 (목적) 지자체 자립 지원정책 간 서비스 편차*가 있어, 장애인 자립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등 중장기계획 수립
 -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립정착금 등 지원 중이나, 편차 존재(500~1,500만원)
- (경과) 장애인의 자립욕구 및 필요서비스 관련 거주시설 전수조사('20.9~'21.1월)
 - * 시설 거주 장애인 24,214명 대상 조사(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결과, 의사 표현 가능한 대상자의 약 2,000명(33.5%)이 지역사회 자립 희망
 -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자립 지원정책 방향, 서비스 지원방안 등 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21.3월~7월)
 - 단계적인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추진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21.8월)

2 추진 개요

비전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추진 원칙	◇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결정권 보장 ◇ '주거+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로 안정적 자립 지원 ◇ 시범사업 → 법·제도·인프라 정비 → 본사업 시행
목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① 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 장애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 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
예상 결과물	① 지역사회 자립대상자 발굴기준 및 지역별 대상 규모 추계 ②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자립지원 인력 역할 규정 ③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필요서비스 수요 등 파악 및 개발 ④ 지역사회 자립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종단연구)
시범 사업 주요 추진 방안	① 참여 지자체 공모 ■ 지자체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사업추진 의지 고려 ■ 주택 공급, 예산, 전담팀 구성 등 사업추진 여건 고려
	② 대상자 특성별 모형 마련 ■ 대상자의 장애특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립 지원모형 마련 * 시범사업 연차별 모니터링 및 모형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③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 지원 ■ 중앙정부·지자체의 기존 복지제도·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 * 기초생활급여, 활동지원, 일자리, 사회서비스기관, 의료기관 연계 등 ■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지원 체계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 장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22년~)

3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2년 ~ '25년
- (사업 운영 주체)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 (사업대상) 총 600명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 *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 (사업규모) 시범사업예산 +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구성
 - 시범사업 예산 : '24년 11,734백만원(국비+지방비)
 - * 국비 50%, 지방비 50%(광역:기초 매칭비율은 광역·기초 간 협의하여 결정)
 - 기존 장애인 대상 사업 및 지자체 자체 지원 연계 활용
-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립 경로 조성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수립

4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2022년 : 도입기 〉

- 지역별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선정(지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 자립지원 사업 안내·홍보와 함께 거주시설별 자립욕구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 수요 파악 및 대상자 발굴·지원
- 중앙 및 지자체의 주거·고용·복지서비스 등 자원 발굴 및 연계
- 연차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관련 연구
- 시범사업 지침 마련(연차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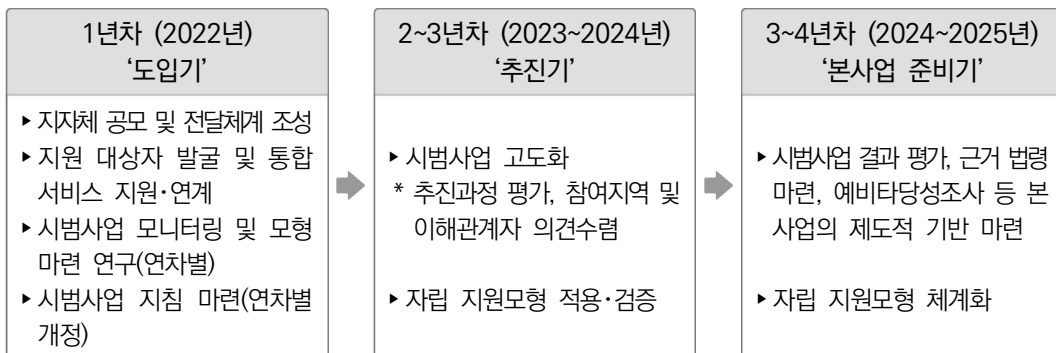
〈 2023~2024년 : 추진기 〉

- 사업추진과정 평가, 참여지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범사업 고도화
- 대상자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자립 지원모형 적용·검증

〈 2024~2025년 : 본사업 준비기 〉

- 시범사업 결과 평가,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준비
- 연차별 연구를 통한 자립 지원모형 체계화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5 2024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일정	구분	추진계획	주체
1~2월	3차년도 시범사업 준비	○ 24년 시범사업 운영 준비 - '24년 운영지침 개정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미참여 지역 중심) - 신규 참여지역 모집공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2~3월	신규 지자체 선정	○ 신규 지자체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세부이행계획서 확정	○ 신규 지자체 세부 이행계획서 확정 (지자체 →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자립조사 교육	○ 자립조사 교육(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자립조사의 이해, 운영 과정, 조사원의 역할, 조사 방법 등	한국장애인 개발원
3~6월	수행기관 (제공기관)선정	○ 수행기관(제공기관) 선정 - 지자체별 사업수행기관(제공기관) 선정 * 선정 공문 안내(지자체→복지부, 수행기관)	지자체 (수행기관)
	전담인력 채용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 채용 결과보고(수행기관→지자체)	수행기관
	자립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자립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공무원, 의료인, 사업수행기관장, 지역사회 전문인력, 권익옹호기관 담당자, 해당 시설관계자 등 8인 이상	지자체
	시범사업 홍보 (설명회, 간담회)	○ 지역 내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홍보(지자체) - 장애인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홍보, 장애인, 보호자 대상 설명회, 간담회 개최 ※ 지자체는 공문 등 통해 거주시설 대상 시범사업 참여 협조 요청	지자체 (수행기관)
	장애인 자립조사, 단기체험 지원 등 자립 희망자 발굴 (연간 상시 진행)	○ 장애인 대상 자립조사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자립 조사 통해 자립 희망자 발굴 * 기초, 심층으로 구분하여 자립조사 시행 * 기초 : 지자체에서 장애인 대상 모바일, 서면 등 기초조사 시행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위임장) 포함) * 심층 : 조사원을 구성하여 개인별 인터뷰 조사 시행 - 필요에 따라 '단기체험 지원'과정 운영 - 기초,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자립의사 확인)하여 자립희망자 발굴	지자체 (수행기관)
5~6월	시범사업 모니터링	○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상반기) - 대상자, 주택, 서비스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시범사업 전문교육	○ 시범사업 전담인력 전문교육 및 간담회	(한국장애인 개발원)

일정	구분		추진계획	주체
6~8월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신청' 접수 - 자립조사 및 단기체험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신청 접수(장애인 자립신청서 작성) ※ 자립의사가 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참여한 2명의 조사원이 '자립의향확인서'를 작성	지자체 (수행기관)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 수립 등	○ '자립신청서' 작성한 장애인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동의 진행 - 자립 후 변화되는 주거지, 이용서비스, 지원인력, 유의사항 등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동의	수행기관
		지원 유형 등 심의	○ 자립조사 결과 및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시범사업 대상자 심의 - 장애인 자립의사, 보호자, 관계자 등 다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상자 지원유형 등 심의	자립지원 위원회
		선정 및 결과 안내	○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토대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지자체→ 자립대상자, 보호자, 수행기관, 거주시설)	지자체
8~10월	공적서비스 사전연계 및 입주 지원		○ 공적서비스, 민간자원 등의 사전서비스 신청 및 연계 -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에 따른 공적서비스, 민간자원 등 사전 신청 및 연계 ○ 시범사업 주택 입주 지원	지자체, (수행기관)
	시범사업 전문교육 (보수)		○ 시범사업 전담인력 전문교육 및 간담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하반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10~12월	개인별자립지원 및 서비스 모니터링		○ 개인별 자립 지원(공적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 서비스 만족도 및 자립 적응 정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12월	시범사업 평가		○ 지자체 추진상황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시범사업 성과 공유		○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지역별 우수성과 공유 및 포상 - '25년 시범사업 운영 방향 및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등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정산 및 결과보고		○ 24년도 정산 보고 및 결과보고 (지자체 →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6 2023년 주요 추진현황

㉮ 2023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 (지자체 및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 선정
 - 지자체 주도형 3곳(경주, 화순, 인제), 그 외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 등 민간기관에 위탁·지정하는 민관협력형(통합, 분리)으로 선정
 - * ('2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서산, 전주, 화순, 경주, 제주(10곳)
 - ** ('23) 안산, 성남, 의왕, 익산, 군산, 거창, 인제(7곳)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대상자 발굴·사례관리를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장애인 4명당 1명 배치)
- (인력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인개발원 전문역량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량강화 유도
 -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이해와 지원 설계 교육(인재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역량 교육(개발원)
- (주거 공급) 국토부 제공 가능 물량 제공 및 지자체 확보(LH 등 협약)
- (자립희망자 및 대상자발굴) ①기초조사(거주시설 등을* 통한 기초 조사) → ②자립조사원 면담조사(심층 조사) → ③지역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립희망자 및 대상자 발굴
 - * 연구용역, 거주시설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등
 - 자립조사원을 활용하여 개인별 면담 및 자립조사 실시, 장애인 당사자·보호자 자립 의사에 기반
- (자립지원위원회) 지자체별로 지원과정 모니터링, 지역 내 자원 연계 등 협의를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장애인복지법 제32조7에 따른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등 활용 가능)
-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모형에 따라(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지원
 - 시범사업 별도 예산지원사항(주택 수리비, 보조기기지원, 건강검진비 등)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복지제도·서비스, 민간 자원 연계

II

추진체계 및 운영

1 운영 모형

▶ 지자체 주도형

구분	내용	역할
지자체 (광역시·시·도)	광역 및 시·도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및 총괄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배분, 예산 교부 - 주택 확보 협조 및 기초단위의 시범사업 협의 등	추진 및 총괄
↓		
지자체(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자립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 - 자립조사 및 대상자 발굴, 전환 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결정 - 필요한 개인별 서비스 관련 외부기관 연계·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개인별서비스 직접지원	운영주체· 직접사업 수행
↓		
지역 내 민간기관	지자체로부터 연계 요청된 개인별서비스 제공(민간협력)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주도형 ▶ 장애인복지과 내에 자립지원팀 등 전담조직 설치 및 지자체에서통합사례관리 인력 또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배치 관리 ▶ 자립장애인 대상 세부 서비스는 지역 민간기관과 협력(자립전문기관 등)		

» 민관협력형

구분	내용	역할
지자체 (광역시·도)	광역 및 시·도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및 총괄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배분, 예산 교부 - 주택확보 협조 및 기초단위의 시범사업 협의 등	추진 및 총괄
↓		
지자체(시·군)	시범사업 운영 주체	주체
↓		
사업수행기관	전담기관 신규 선정 또는 지정	사업수행
↓		
서비스제공기관	거주 전환 장애인 대상 직접지원 서비스	서비스제공

※ 민관협력형

- ① (통합형) 사업수행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합하여 운영
 - ▶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1개 기관에서 통합수행
 - ▶ 주로 지역 간 이동이 짧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 ② (분리형) 사업수행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을 분리하여 운영
 - ▶ 대상자 발굴·관리 업무와 직접 서비스제공을 각각 특화된 기관에서 별도 지원
 - ▶ 관할지역이 넓고 지역자원이 풍부한 지자체에 적합

추진주체		역 할
		- 예산 및 실적 등에 대한 사업전반 관리·감독 • 광역수행기관 운영·관리·감독
기초지방 자치단체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 지역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관리·감독 - 기초단위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운영 - 자립조사 책임 및 수행 등 대상자 발굴 (기초, 심층 조사 등 조사원 활동) - 자립지원위원회 관리 및 대상자 선정 -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주거확보 추진(LH지사 협약 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 관리·감독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광역단위 수행기관	시범사업 수행기관	* 지역별 운영 유형에 따라 수행기관 및 제공기관 역할 분담 조정 * 광역단위 사업 수행기관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운영 지원 등 • 대상자 발굴 협조 • 대상자 자립주택 확보를 위한 지원(LH지역본부 및 지역공공간 협의) • 대상자 사업 전반 현황 보고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시범사업 평가 •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기초단위 수행기관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 기초단위 사업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 거주시설 대상 정보제공 및 자립서비스 안내 • 자립조사 지원 및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지원,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단기체험 지원 과정 계획 수립·진행 및 의뢰 • 장애인 자립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 계약 및 자립(입주)장애인 입주 계약 등 추진 • 공적서비스 및 지역자체추진 사업 연계 목록 및 방안 마련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 대상자 개인별 자립 지원 - 정보제공, 개인별조사,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 등 •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을 위한 개인별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 • 자립생활에 필요한 관련 교육 제공(생활, 안전, 금전 등) • 장애인 입주 주택 소규모 수선 및 임대료 등 관리 •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협력관계 조성 • 사업 관련 현황, 실적, 점검 대응, 결과보고 등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사업 운영절차

I. 시범사업 운영준비

1. 자립지원 체계 조성
2.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3. 지역 내 환경조성 및 안전체계 구축
4.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II. 사업 운영 절차

1. 자립조사
2. 단기체험 지원
3. 자립신청 접수
4.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동의
5.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6.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7.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사전 신청
8. 개인별 전환(이주) 지원
9. 대상자 모니터링

I

시범사업 운영준비

1 자립지원 체계 조성

가. 세부이행계획 수립

-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공모 신청 시 수립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세부 이행계획서’(목표치, 추진 계획 등 구체적 서술)를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제출
 - * 국시비 50% 매칭(기초지자체 도비 비율 합의)
 - * 세부이행계획서 포함 공문 제출(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계획,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방안,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운영체계 구성 방안 수립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 내 홍보(지역 유관기관 간담회, 설명회 등) 및 장애인 대상 자립조사 및 정보제공 계획, 대상자 선정 계획 등
- 주거 연계 및 지역 내 각종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지원계획, 예산편성·집행 계획 및 평가 계획 등 포함

나.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대상) 지역 내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 * 예시: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기타 사회복지 법인 등
- (역할) 지역 내 거주시설 관계형성 및 유지,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 내 자원조사 및 발굴 및 연계, 시범사업 주택 운영주체로 주거 관리
 - * 대상자 발굴: 정보제공, 자립조사 지원, 자립서비스 안내, 개인별면담, 개인별전환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자립지원교육, 주거전환 과정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등

- (선정기준) 장애인 자립 지원 또는 유사 사업수행 이력,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 관련 연구실적, 기관 설립 목적 및 방향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수행기관 선정

* 선정기준 지표: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수행 관리 및 지원실적, 장애인 자립 성과 연구,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대내외 정책사업 및 연구사업 등, 종사자 전문성(자격증 및 경력 등), 기관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등

- (선정방식) 공모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춰 기관 선정

* 유사사업·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수행기관 선정(민관협력형)

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자격) 장애인의 자립서비스 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예시: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 (역할)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자립조사, 대상자 주거전환 지원,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 및 지원계획에 따른 개인별자립지원 서비스, 자원 발굴 연계, 기초지자체 시범사업 주택 운영주체로 주거 관리 등

- (지원) 대상자 4명당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운영비 1명 당 월40만원, 자립대상자 개별지원 사업비

* 운영비는 산출기준이며, 사업을 운영함에 필요한 경비일체(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등) 등 제3편 행정사항 및 지원사항의 예산집행 기준 참조

* 민간협력형-분리형으로 운영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모두 지원, 사업수행기관은 자체 운영(지자체 지원)

** 지자체는 분기별로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지방재정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범사업 운영 지침 준수)

- (선정기준) 기관설립 목적 및 방향성,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 수행실적,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 등 고려

* 선정기준 지표: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사업수행 경험, 장애인 개인별 자립 지원 및 주요 성과, 거주시설 대상 자립교육 및 권익옹호 실적 건수, 자립지원 전문인력 경력 등

- (선정방식) 공모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춰 기관 선정

※ 지자체 주도형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시 사업수행기관(제공기관)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역할과 선정·채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운영

〈시범사업 수행기관 및 제공기관 선정 기준 예시〉

구분	구분	선정 기준 내용	비고
수행 기관	자립지원 사업 수행 관리 및 실적	-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공개심사 등 지자체 여건에 맞춰 기관 선정
		- 자립지원 사업수행 관리 및 지원 실적	
		- 장애인 자립 성과 연구	
		-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체계 구축 역량 등	
	사업운영 전문성	- 기관 설립 목적	
		- 주요 운영사업	
제공 기관	사업 수행 경험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자립지원 경력 등)	
		- 재정능력,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등	
		-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사업수행 경험	
		- 장애인 개인별자립 지원 경험	
		- 자립체험 및 자립주택 운영 실적	
	사업운영 전문성	- 자립교육 및 권익옹호 실적 건수 등	
		- 기관 설립 목적	
		- 주요 운영사업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자립지원 경력 등)	
		- 재정능력,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등	

라. 시범사업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 (자격기준)

-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전문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단 사회복지사 2급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의 소지자는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호봉 기준)에 해당함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1회차 채용공고에 전담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 2회차 공고부터 2급 이상 자격소지자의 사회복지경력기준을 '1년 이상'으로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채용 가능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채용공고 후에도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경력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준 조정

- * 기 참여지역 중 전담인력 채용에 어려움(3회 이상 공고에도 미채용 등)이 있었던 경우, 1회차 공고부터 현재 채용된 전담인력 자격기준 적용 가능
 - * 자립지원 경력 :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력자
 - * 경력인정 기준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근무경력 기준)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적용
- (채용)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전담인력 신규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상황에 따라 기존 인력도 제공인력으로 가능함
- * 전담인력 채용 상황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력을 우선채용(2인~3인), 자립대상자 확정 시 추가채용 등을 지자체와 협의
 - * 전담인력 채용 확정 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종사자 결격사유)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결격사유 확인 및 범죄경력, 성범죄경력 사전 조회 실시
- (배치 및 보수기준) 자립대상자 4명당 1명, 사회복지사 4급 5호봉 기준
- 전담인력은 장애인 자립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고 대상자 장애 및 생활 정도, 주말·야간 지원, 문서처리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 수행기관(제공기관)은 전담인력별 업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관리 필요(전담인력은 시범사업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 수행기관(제공기관)은 전담인력 4명당 1명의 선임전담인력을 선정·배치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실무 운영 및 관리, 신규 전담인력 교육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 선임전담인력 선정은 자격 기준,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장의 추천으로 지자체가 승인하여 선정(전담인력이 4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에서 전담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선정)
 - 전담인력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4급 5호봉) 및 제수당 등을 고려하여 지급
 - * 선임전담인력 수당(월 10만원), 정액급식비(월 10만원), 시범사업 1년 이상 근무자 대우수당(월 5만원) 등 제3편 행정사항 및 지원사항의 예산집행 기준 참조
 - *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보수체계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으로 인원 추가 등 가능
- (근무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시범사업 운영기간)
- * (고용노동부 화신) 동 시범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담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을 시범사업 운영기간 종료시점까지 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 다만, 본사업이 시행된 경우 「기간제법」 제5조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채용

○ (주요역할)

- (지원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개별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보완 등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전환을 목표로 지원
- (조력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의 주간·야간·주말 활동 등을 지원하고 정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대상자 욕구에 따라 일상생활, 재산관리, 일자리, 건강, 관계 형성 등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
- (동행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 시 돌발행동·부적응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개별 습관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옹호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옹호 및 지지자 역할 수행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담인력 주요 업무 예시〉

구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주요업무 예시	주요목표
자 립 전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자립희망 장애인 발굴
	자립조사	
	단기체험 지원	
	자립신청 접수	
	개인별전환 지원 계획수립	
	- 시범사업 홍보 및 장애인 대상 자립서비스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거주시설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등 홍보	
	- 기초 및 심층 조사 계획 수립 지원 - 조사원 구성 및 조사원 교육 - 조사 지원 및 조사원 활동 - 조사 결과 분석	
	- 시범사업 대상자 중 자립 의사는 있으나, 자립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 장기간 시설 거주 및 장애 특성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당사자, 보호자) 등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단기 자립 체험을 지원	
	- 자립조사, 단기체험 등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신청 접수(의사 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자립의향확인서를 자립조사원이 작성)	
	- 자립조사, 단기체험 등 결과 분석으로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자립욕구, 가족상황, 건강상태, 도전적행동 등의 필요도 중심) *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은 위원회 심의자료 붙임으로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하고 최종 선정 후 세부 지원계획 수립 이행 추진	

구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주요업무 예시	주요목표
	자립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자료 준비 * 기초, 심층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자립신청서(의향확인서),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첨부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결과보고, 회의록 작성 등)	안정적 자립 및 주거전환
	자립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명단 및 결과 안내 사항 등 확인	
	사전지원 서비스 연계	- 활동지원 자격책정을 위한 서비스종합조사 시기 확인 -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건강보험 보조기기, 재산관리, 식사지원, 주간활동,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전연계 가능서비스 신청 - 의사결정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공공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의 신청 고려 - 주택계약, 입주청소,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환경 조성	
	퇴소지원	- 대상자 개인 물품 등 인수인계(통장 및 도장, 카드, 개인 자료 등) - 대상자 건강 관련 인수인계(건강진단서, 소견서, 약복용, 이용병원 정보, 검진일정) - 대상자 특성 관련 인수인계(장애특성, 습관, 식사 상태 및 지원, 가족 상황, 지인 관계, 선호 활동 등) *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최근 건강검진결과, 진료 관련 등)은 반드시 확인	
	이주 준비	- 이사업체 선정, 이주일정 등 이사 지원계획 수립(장애인, 거주시설 협조) - 장애인 선호도 또는 동행하여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물품구매리스트 작성 등 * 주거 및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애인 부담 원칙	
자 립 후	주택 계약 및 입주	- LN지역본부,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확보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 및 장애인 입주 계약 처리 -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 환영식 등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개인별자립 지원 계획수립	- 동료상담. 개인별 상담을 통한 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목표 설정 -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서 작성(중장기-단기-월-주 단위 등의 목표 수립)	
	정착지원	일상생활, 사회생활, 낯활동, 주간보호, 일자리, 건강지원, 관계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지역사회 자립 정착지원	
	만족도, 모니터링 및 환류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재수립 - 사례지원회의 - 주택 환경 모니터링 - 업무일지 등의 각종 문서작성 및 보고서 제출 업무 등	

2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가. 시범사업 홍보

- **(홍보)** 지자체(수행기관)는 보도자료, 설명회, 간담회,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의 홍보 추진
-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과 추진 계획 및 협조사항 등을 관할 시·군·구, 읍면동, 거주 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 외에 지역 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단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지자체(수행기관)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장애인단체,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범사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나. 정보 제공

- **(장애인, 보호자 등 직접 제공)**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입소자,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이해하기 쉬운 그림정보 및 소그룹으로 정보제공)
 - *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정보제공 여부 확인
 -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 방문 전 거주시설 담당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설 방문계획 마련 등 협조 추진
- **(자립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제공)**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서 관내 거주시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

3 지역 내 환경조성 및 안전체계 구축

가. 지역 환경조성

-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거 전환 전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자원 연계 방안을 사전 구축
 - 대상자가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됨과 동시에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

나. 주거지원

- (업무협약)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지사),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제공 협약추진

다. 활동지원·주간활동·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 이용시설 연계) 지자체(수행기관)는 활동지원·주간활동·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목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활동 지원사 지원, 주간활동 프로그램 참여, 일자리 등을 참여 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

-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 수립)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의 안전 관련 위급상황 시 연락 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분장 등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주택 및 수행기관 내 게시

- 경찰서, 소방서와의 비상연락체계
- 관할 시·군·구와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대피도
- 위급상황에 따른 직원의 업무분장 내용
- * 안전담당자 지정 등

- **(위급상황 대응 훈련)**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주택입주자를 대상으로 위급 상황* 대응 훈련을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

*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집단발생,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학대, 사기, 사망 등

- **(주택안전 관리 점검)** 지자체(수행기관)는 화재 감지기구(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 경보기 등), 안전설비(가스 및 전기 차단기, 스프링클러 등)에 대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서식25]_자립대상자 안전 및 주택 안전 관리 등 점검표

- **(보고 체계)**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위급상황 발생 시 위급상황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조치 후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보고받은 상황을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서식26]_사고보고서 활용

- **(자립대상자 안전 교육)**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대상자의 위험사항 인지, 안전보호 수칙 및 예방 교육 등을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교육(시청각 자료, 동영상, 역할극 등을 활용)

〈교육예시〉

* 성폭력 예방, 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보건 위생 관리(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화재 대비, 교통안전 교육 등

- **(전담인력 등 교육)**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담인력, 대상자 지원 활동지원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권장

〈교육예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안전관련 교육 시행 시 적극 참여 권고(신규 교육대상자 우선 참여 유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리 실습 교육 이수 권장

- **(보험가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야외 활동 시 여행자 보험 등 가입

- **(의료 지원체계 확립)** 지자체(수행기관)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연계, 정기진료, 응급상황 대비 위한 의료 지원 체계 확립

4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치) 지자체에서 구성 및 운영 관리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를 별도 구성 또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7에 따른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 분과) 등 활용 가능

○ (구성) 8인 이상

- 자립지원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의료인, 사업수행기관장, 지역사회 전문인력, 권익옹호기관 담당자, 해당 시설관계자 등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참여 권고, 기존 구성인력이 있는 경우 기존 운영방식 준용
 - *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지역 내 담당 기관 포함 필요(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의료기관 등)
 - * 위원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
 - * 광역단위 사업수행 시 대상자 거주 예상지역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자립하는 해당 시설관계자가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운영 시기)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기능 가능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시 시범사업 담당공무원이 필수 참여하여 자립 심의 과정을 확인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대상자 자립 심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는 대면 회의로 운영
 - * 단순 사례지원 및 변경계획 사항 등은 서면회의 개최 가능
 - * 대상자의 상황 변화(건강상 문제, 법적 분쟁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립지원위원회 소분과 등 운영 가능
 - *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시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회의 운영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을 협조해야 함
 - * [서식17]_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활용

○ (위원회 역할)

- (자립대상자 심의) 자립지원위원회는 지자체(수행기관)가 준비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서비스 연계상황 및 지원유형 등의 적정성 심의
 - * (개인별전환 지원계획 검토) 자립 과정과 개인별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추가 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필요사항 등 논의
 - * (모니터링) 지역사회 전환 이후 대상자 정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례관리 주기의 적절성, 지원서비스 활용, 만족도 등 모니터링 참여

II

사업 운영 절차

사업 운영 절차		주요 추진 내용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 조사 및 접수의뢰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의 자립지원
자립조사		- 지자체(수행기관)는 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상담 및 자립조사(기초·심층) 진행
	*단기체험 지원	- 단기체험 과정은 선택사항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희망자 발굴 및 자립대상자 선정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
조사분석 및 자립희망자 발굴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자립희망자 발굴(생활실태, 건강상태, 도전적행동 정도, 가족상황, 자립의사, 선호서비스, 필요지원 등의 확인 및 분석)
자립 신청 접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조사 및 단기체험 등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 신청' 접수(자립희망 장애인이 자립신청서 작성)
개인별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동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희망 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주택,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 의료연계, 재산관리, 낮 활동, 주말 휴일 대응 등 대상자의 필요한 서비스 및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환 계획 수립)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음
	* 장애재판정 대상여부 확인	- 장애재판정은 필수가 아니며, 재판정 시기 도래자 또는 장애정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만 요청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 자립지원위원회는 개인별자립 지원 방향 및 계획 논의, 공공·민간 서비스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지자체→장애인, 보호자, 거주시설, 수행기관)
지역자원 및 서비스 사전 신청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 즉시 사회보장서비스 신청과 연계를 위해서 관련 장애인 정보, 행정기관의 사전 협조, 필요 서식 등준비(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및 연계
지역사회 전환(이주지원)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대상자의 지역사회 전환(이주지원)과정 지원(이사, 주거환경조성, 전입신고 등)
지역사회 자립정착 모니터링 및 지원		-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 건강 및 지역생활 모니터링 - 서비스 모니터링 및 만족도 점검 및 재수립

II

1 자립조사

가. 자립조사

- **(자립조사의 의의)** 자립조사는 시범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및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의 복지서비스(사례지원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보조기기, 주거환경 조성, 건강검진 등)신청에 필요한 자립서비스 욕구 및 선호도 정도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
- **(지자체 역할)**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과 거주시설 등 협조 필요기관에 공문발송 및 안내
 - 지자체는 읍·면·동장에게 시범사업 추진을 알리고 자립을 희망하거나 시범사업이 필요한 장애인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해당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시범사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진행해야 함

* 거주시설(장, 종사자)은 지자체(수행기관)에서 자립조사 추진 시 상담실 제공 및 종사자 조사 참여 등 협조
- **(조사대상)**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조사 추진

*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조사 진행 (1-1시설입소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발굴 및 조사 참조)
- **(개인정보 동의)**
 - 자립조사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므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법적 근거, 정보 활용, 제공 범위, 목적 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 필요

* [서식3]_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3-1 위임장) 활용(수정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 동의 관련 참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

-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자립조사와 단기체험,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 1)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범사업 목적 외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범사업 지자체,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개인 등)에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민감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조치를 취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간정보의 처리 제한))

-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참여 또는 신청 시 대상자(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를 받아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이하 생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이하 중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시범사업 대상자의 초상권 동의 확인)

-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상자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홍보자료(보도자료, 안내서, 소식지, 누리집 게시 등)로 활용할 경우 사전에 대상자의 동의 확인 필요

※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신청(스스로 신청, 보호자 신청, 직권 신청) 관련 법령 참고

발달장애인법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2. 6. 10.〉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3.]

※ 발달장애인법 상 ‘보호자’의 범위 참고

발달장애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사 운영시기)

- 기존 참여 지자체는 '24년 1월부터, '24년 신규 참여 지자체는 공모 선정 후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실시
-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 지속 발굴을 위해 정기·수시로 조사 진행 추진

○ (조사 운영 방식 및 원칙)

- 담당인력 등 자립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조사 전 자립조사교육*을 이수
 - * 장애의 이해, 시범사업의 이해, 조사 방법 등 자립조사 관련 전문 교육(한국장애인개발원 실시)
- 기초조사지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층조사 실시
- 심층조사는 2(조사원):1(장애인) 원칙으로 자립 욕구 확인 및 주거, 돌봄, 건강, 일자리 등 분야별 서비스 선호도와 필요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면상담으로 진행

- 자립조사 시 장애인 상담 외에도 보호자 및 담당 생활지도원과 상담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
- 심층조사는 거주시설(원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조사 가능
 - * 시설 또는 원가정 밖의 편안한 공간에서 면담을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AAC 도구, 쉬운 단어, 동영상 등을 활용해야 하며 이 외에도 보호자, 시설 담당 생활지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AAC : A(Augmentative): 말을 보완하거나 A(Alternative):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해 C(Communication): 의사소통한다는 뜻으로, 장애인들이 그림이나 글을 가리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안대체 의사소통'을 뜻함
- 자립조사원은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층조사지 및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함

나. 자립조사 운영 절차

〈자립조사 운영 절차〉

조사절차	세부 내용
① 자립조사 계획 수립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의 수요 등을 확인하여 자립조사 일정 등 운영 계획 수립 *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조사는 거주시설과 상담실 제공 및 시설종사자 상담 등 사전 협의
② 조사 대상자 목록 등 자료 준비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조사 참여 희망 장애인을 목록화하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AAC자료 등을 준비
③ 조사원 구성 및 조사원 교육	- 수행기관은 심층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안내 및 조사 운영과정, 조사 방법, 조사지 기록 등의 교육 추진
④ 기초조사 (모바일, 서면 등)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종사자), 장애인(보호자)의 협의하여 모바일, 서면 등 방식으로 기초조사 진행
⑤ 심층조사(조사원 2:1)	- 자립조사원은 기초조사 결과 참고하여 심층조사 진행하고 심층조사자와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제출
⑥ 조사내용 분석 및 결과보고	- 지자체(수행기관)는 기초조사와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보고(자립 욕구 정도, 가족상황, 건강상태, 도전적행동 정도, 서비스 선호도, 필요 지원 등의 확인 및 분석하여 결과 도출)

○ (자립조사 계획수립 및 자료 준비)

- 지자체(수행기관)는 관내·관외 거주시설 현황 또는 재가장애인(입소대기자 등)현황을 확보하고 자립조사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 * 시설 및 담당자(공무원)는 수행기관에 현황 등 제공 협조(수행기관 → 시·군·구 → 수행기관)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보호자),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 추진
 - * 사업의 필요성,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여 시설 협조 및 보호자 설득 등 공감대 형성
- 수행기관은 조사 대상자 및 개인별 정보제공 동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 자립 서비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준비

○ (조사원 구성 및 교육)

- (조사원 구성)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공무원, 자립분야 전문가*, 장애인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성·운영
 -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경험자, 시설(발달)장애인 상담 지원 경험자 등 우선 구성

- (조사원 교육) 수행기관은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구성된 자립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운영과정 및 조사원 역할 등의 교육 추진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립조사 교육' 참여 및 수행기관 자체 교육 추진

○ (조사진행 및 분석)

- (기초조사)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조사 참여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진행(모바일, 서면 등 다양한 방식)후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작성

- (심층조사) 자립조사원은 심층조사 시 조사 참여 장애인의 자립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다양화(그림판, 삽화, 동영상, 사물 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지와 결과보고서를 작성

* [서식1]_자립 기초조사지, [서식2]_자립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활용 [서식4]_자립 심층조사지, [서식5]_자립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활용

○ (조사 항목)

- 기초조사 항목 및 내용

항 목	내 용
기초사항	- 성명, 성별, 연령, 등록장애명, 장애 정도, 중복장애여부, 소득구분, 의사소통 등
(시설)이용실태	- 시설입소 경위, 연고여부, 입소기간, 시설이용프로그램 등 * 재가장애인 등은 지역사회 이용실태 조사내용으로 구성
지원욕구조사	- 생활지원, 일자리, 건강 및 안전, 옹호 및 자립서비스 선호도 등

- 심층조사 항목 및 내용

항 목	내 용
기본정보	- 조사 일시, 장소, 조사자, 참여자 등
장점및알아가기	- 장점, 당사자 알아가기 - 좋아하는 것(음식, 취미, 활동, 교육, 사람)
당사자 지원하기	-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자립지원	- 어떤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 (자립희망자 발굴 및 관리)

- (자립희망자)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목록화 하고 자립 신청서 접수 및 자립지원위원회 상정, 전환지원 일정 등을 준비

- (자립 비희망자)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사유 등과 함께 자립비희망 장애인을 목록화하여 필요시 상담과 단기체험을 통해 자립의사 재확인

1-1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발굴 및 지원

○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주택, 일자리, 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자립 서비스를 지원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을 발굴 및 지원

〈 사유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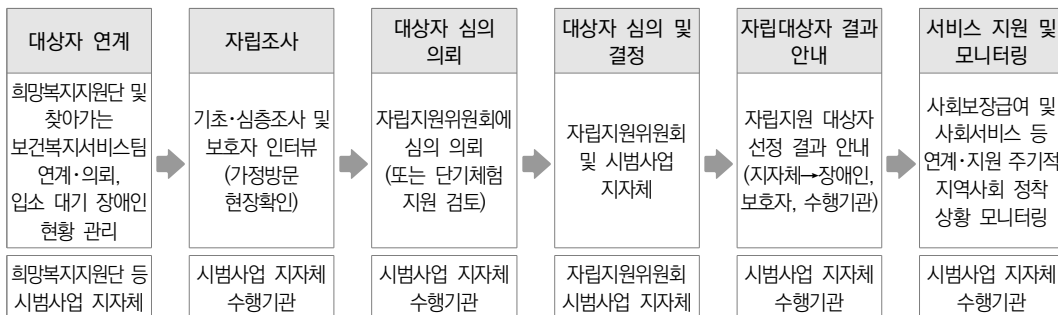
- 보호자의 장기 부재(사망,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로 장애인을 돌볼 보호자가 없어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중증 장애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 학대 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 대상자 발굴

- 보건복지부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등과 시범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 요청(공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명단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안내
- 지자체는 타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과의 협력, 입소 대기 장애인 현황 관리 등을 통해 자립이 필요한 재가장애인 적극 발굴
- 시범사업 지자체(수행기관)는 발굴된 재가장애인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주거 상황, 보호자 돌봄상황 등을 확인하여 종합의견 정리

* [서식1] 자립기초조사지 활용(가구, 경제, 주거, 보호 및 지지체계, 건강 상황, 돌봄상황 등에 대한 정보 등)

○ 대상자 지원절차



2 단기체험 지원

○ (지원 목적 및 지원기관)

- 단기체험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실제 자립 전 지역사회 의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등에 대한 단기체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원

* 단기체험 절차는 '선택사항'으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은 신속한 자립을 지원해야함

○ (지원 대상)

- 단기체험은 자립 의사는 있으나, 자립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 장기간 시설 거주 및 장애 특성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당사자, 보호자) 등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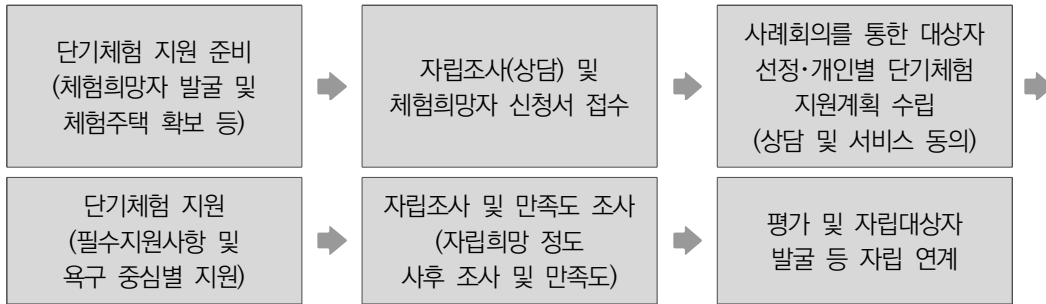
○ (기간 및 운영)

- 단기체험은 최소 1주일 이상으로 하되, 개인별 욕구 및 의사 등에 따라 연장 등 가능
※ 수행기관(제공기관)은 단기체험 연장 시 그간 모니터링 상담 결과 등을 확인하여 연장 필요성 및 실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체험기간 등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필요
- 단기체험은 필수 지원과 개인별 욕구 중심 지원으로 진행하되, 개인별 욕구 중심 지원 사항이 우선되어야 함(일정 및 예산 배정 등)
- 단기체험은 집단 체험 지원 방식 지양, 1:1개인별 맞춤형 단기체험으로 지원

〈단기체험 지원 사항 예시〉

구분	필수 지원 사항	개인별 욕구 중심 지원 사항
목표	- 다양한 접근의 단기체험을 통해 자립의 의미 및 장애인 자립의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함	- 개인별 맞춤 단기체험을 통해 자신감 및 자기결정 능력 향상 등의 자립 역량강화 도모
내용	- 자립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및 교육(활동지원 서비스, 자립주택, 자립정착금, 건강 및 금전관리, 대중교통(장애인콜택시) 이용, 근린생활시설, 주민센터 복지상담 등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 자립한 동료장애인 집 방문 및 동료상담	-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선호하는 활동 등을 반영 하여 지원(예 : 자유시간 갖기, 친구와의 맛집 탐방, 콘서트 관람 등)
평가	- 자립기초조사, 심층조사 - 보호자, 시설종사자 등 인터뷰 1회 이상 - 체험 장애인의 사전·사후 자립조사 및 평가	-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지원방식 으로 평가(동료와 함께 체험 희망, 대상자의 선택 내용과 선택 방식, 선택하는 환경과 맥락을 기록 (고르기, 가리키기, 가져가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 등을 이해)

○ (지원절차)



○ (지원 준비)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단기체험 목적의 주택 마련, 자립체험 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 지역 자원 연계
- 체험주택은 자립 주택 공실 활용, 관내 거주시설 체험홈 활용 또는 지자체(수행기관)에서 마련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동료상담, 자립체험 프로그램 등 연계 등

○ (신청서 접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조사 결과 또는 거주시설 및 보호자 등에 의한 의뢰 등으로 단기체험 희망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

* [서식3]_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8]_단기체험 신청서 활용

○ (단기체험 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인의 욕구 정도, 예산과 자원(인력, 지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단기체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 회의 개최
- 단기체험 대상자는 수행기관 내부 사례회의로 선정하여 지자체 안내

* [서식6]_사례회의록 활용

○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 수립 및 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체험기간, 지원 내용 등 개별 사정을 통한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필수지원 사항, 개인별 욕구 중심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해 계획 수립

* 필수지원(자립교육-활동지원서비스, 금전관리, 자기관리 등), 욕구 중심 지원(당사자 선호 활동)

- 계획 수립 시 장애인, 보호자, 시설담당자간의 협의 및 지원 회의 추진

* 장애인, 보호자, 시설담당자는 수립된 계획 일정으로 서비스 동의 등

* [서식9]_개인별 단기체험 지원계획서 및 동의서, [서식10]_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활용

○ (단기체험 지원)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단기체험 장애인의 낮 활동, 서비스 연계 과정 등을 위해 지역자원 연계
 -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 등
- 안정적인 단기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대응체계 마련 및 전염병 예방 수칙 등 안내
 - * 거주시설 복귀 시 코로나19 검사 등 확인 후 복귀

○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구조화된 설문지와 인터뷰로 자립 체험 과정 및 결과를 평가
 - * 단기체험 대상자 : 자립에 대한 이해, 단기체험 만족도, 자립 체험 전과 후의 비교 등
 - * 보호자 및 시설종사자 : 단기체험 지원 관련 의견,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변화 등
 - * [서식11]_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서식12]_단기체험 설문지(보호자용) 활용
- 단기체험 평가 시 자립조사(심층)를 진행하여 자립 의사 확인, 체험 만족도 등의 평가회의 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 * 보호자, 시설관계자 등 체험 결과 공유 및 향후 지원방향(자립, 체험연장 등) 논의
- 자립의사가 확인된 장애인은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립대상자로 선정 필요
 - * [서식1]_자립 기초조사지, [서식2]_자립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서식4]_자립 심층조사지, [서식5]_자립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서식13]_단기체험 결과보고서 활용

○ (고려사항)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단기체험 지원 전 체험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건강 관련 정보**를 시설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지원 내용 결정
 - * 의사소통, 건강상태, 도전적 행동, 보조기기 사용 여부, 지역사회 활동 경험 등
 - ** 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질병 이력을 고려한 약물복용, 식단, 생활습관 등
 - *** 개인정보(주민번호, 질병 이력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집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 필요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단기체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주의 사항, 체험기간 내 지켜야 할 공동수칙,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사 등의 지원인력 및 수행 기관 소개, 주택 내 가구 및 가전 사용 방법, 체험 일정 등 안내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단기체험 과정 중 주말 또는 야간 지원 시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인력 배치 필요
 - * 활동지원, 단기체험비, 지원인력, 운영비, 체험주택 공간 임대료 등 제3편 행정사항 및 지원사항의 예산 집행 기준 참조

3 자립신청 접수

- **(자립신청 접수)**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 및 단기체험 등을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동의에 기반한 자립 신청·접수
 - 자립 희망 장애인이 자립신청서 작성 시 자립의사를 반복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보류하고 자립의사 재확인 필요
 - * **[서식14]**_자립신청서 활용
-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의사가 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시범사업 안내와 설명을 진행했을 때 정서적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장애인에게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를 작성
 - * 긍정·부정적 욕구(‘좋다, 싫다’, ‘예’, ‘아니오’ 등), 생각, 표현 등을 언어적·비언어적(눈빛, 몸짓 등) 형태로 표현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해당 장애인을 장기간 가까이에서 관찰했거나 지원했던 사람(보호자, 시설종사자 등)의 의견 등 고려 필요
-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는 심층조사 시 의향을 확인한 조사원 2인이 작성하고 서명
 - * **[서식15]**_의사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자립조사원(자립의사를 확인한)이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접수

4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동의

가. 계획 수립 및 동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 신청 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조사, 단기체험, 보호자 의견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자립 신청 장애인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 * 전환이 필요하거나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 시 자립신청 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유형과 지원 사항 및 서비스, 제공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에 대해 협의 및 조정
- 특히,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지역 내 제공 가능한 공적자원 및 민간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을 사전 확인하여 수립
 - *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원 연계 등 협의

나. 계획 수립 기관

-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은 운영주체별 모형의 지자체 주도형과 민관 협력형에 따라 작성 기관 구분

〈운영주체별 개인별 전환지원 계획 수립 기관〉

구성요소	지자체 주도형	민관협력형	
		통합운영	분리운영
사업운영 총괄	〈지자체〉 ▶ 사업운영주체	〈지자체〉 ▶ 사업운영 주체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자립조사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자체〉 ▶ 사업운영주체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자립조사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대상자 발굴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전담인력 채용 ▶ 자립조사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의뢰	〈사업수행기관〉 * 위탁 및 지정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지원 ▶ 자립조사 지원 ▶ 대상자 발굴 및 심의지원 ▶ 전환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의뢰 ▶ 전담인력 채용 및 자체교육, 사업관리 및 서비스 시행	〈사업수행기관〉 * 위탁 및 지정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지원 ▶ 자립조사 지원 ▶ 대상자 발굴 및 심의지원 ▶ 전환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의뢰 ▶ 전담인력 자체교육, 사업관리

구성요소	지자체 주도형	민관협력형	
		통합운영	분리운영
		▶ 개인별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이주지원,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전담인력 채용 ▶ 개인별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이주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다. 계획 수립 유의사항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 신청 장애인의 통합적 접근 및 개별지원 관점의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정기적·수시적 상담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신뢰 관계를 형성
- 자립 신청 장애인의 삶의 주거선택지를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하도록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안
- 주거 형태, 장소 등에 대한 자립신청 장애인의 욕구 고려하여 수립
 - * 예시 : 독립적 주거, 아파트, 살고 싶은 동네, 활동지원사, 이용서비스, 이용기관 등
- 자립신청 장애인의 선택 내용과 선택 방식, 선택하는 환경과 맥락을 기록(고르기, 가리키기, 가져가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 등을 이해)
 - * [서식16]_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활용

5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가.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지자체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적정성,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상황, 지원유형 심의 등을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진행 시 조사 결과보고(기초, 심층), 단기체험 평가서 및 결과보고서, 자립 신청서(의향확인서),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등 심의 자료 등을 준비
 -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자립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에 필요한 자료 및 회의 운영 지원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진행
 -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적정 대상자 선정 시 결정 사유 등 보완 자료 필요
 - * [서식1]_자립 기초조사지, [서식2]_자립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서식4]_자립 심층조사지, [서식 5]_자립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 * 단기체험 장애인의 경우 [서식11]_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서식12]_단기체험 설문지 (보호자용), [서식13]_단기체험 결과보고서 포함

나. 개인별 전환지원 계획 심의

- 자립지원위원회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자립의사, 지역사회 지원 여건,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자립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 * 장애인의 자립욕구 및 의사 확인, 지역사회 전환 적정 여부, 대상자 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자립서비스 지원 유형, 지역전환 일정, 발굴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등 적정성 논의 및 결정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체크리스트〉

연번	주요항목	실행여부		비고
		예	아니오	
1	자립조사가 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충실히 실시되었는가 (기초조사, 심층조사 운영의 충실성)			
2	장애인의 자립 욕구 및 필요서비스 등이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3	장애인(보호자)의 상황(건강, 부양(돌봄)상황 등) 및 보호자의 자립 동의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4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가			
5	장애인의 전환계획 및 연계 자원(서비스)등이 장애인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었는가			
6	장애인의 전환계획 및 연계 자원(서비스)등이 안정적 지역전환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가			
7	장애인의 질병, 도전적행동, 보호자 반대 등으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한 내용 등이 수립되었는가			
8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다. 지원유형 심의

- 자립지원위원회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특정 장애유형으로의
쏠림 등을 방지하여 사례별 자립과정을 다양하게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립 신청 장애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의 균형을 맞춰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서비스 선호도 및 필요도 기준에 따라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의 지원 유형 심의

① (자립지원형)

- (대상) 자립신청 장애인 중 일상지원과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및 낮 활동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한 대상자

* 일자리, 활동지원, 주간활동, 이용시설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한 대상자

② (집중지원형)

- (대상) 자립신청 장애인 중 건강과 의료,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도전적
행동, 지속적 질환 관리 등이 필요한 장애인)

* 건강, 의료, 행동 지원, 집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한 대상자

※ (지원유형 심의 기준표 예시1)

지원내용			지원유형				빈도				일일 지원시간				점수			
1	Ⅰ. 생활지원	1. 화장실 이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옷 입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음식 준비 및 식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목욕 및 개인위생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가사 및 청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Ⅱ.일자리 지원	1. 일자리/직업 편의 접근 이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동료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관리자/코치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직무 습득 및 익힘 정도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직무 도움 얻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Ⅲ. 지역 사회 활동	1. 지역사회 내 장소 이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지역사회 여가활동 참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선호하는 지역사회 활동 (교회, 사회복지기관 등)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공공서비스 접근 및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쇼핑 및 상품 구매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Ⅳ. 건강 및 안전지원	1. 약물복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보행 및 이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건강 및 안전 위험 방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건강서비스 및 영양가 식단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정신적 안녕 유지 및 신체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Ⅴ. 사회활동	1. 타인과 함께 교류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친구사귀고 유지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다른사람과 개인적 대화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친목활동 및 시설 밖 사회활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적절한 사회기술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Ⅵ. 권익옹호	1. 자기자신을 옹호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선택과 결정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돈 관리 및 재정관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법적/시민적 책임 수행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자립육구												육구정도				점수		
1	Ⅶ. 자립육구	1. 시설 또는 집(원가정)에서 나가고 싶다.											0	1	2	3	4	
2		2. 혼자 또는 누군가(내가 원하는 사람)와 같이 살고 싶다.											0	1	2	3	4	
3		3. 나만의 집 또는 공간을 갖고 싶다.											0	1	2	3	4	
4		4. 자유롭게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0	1	2	3	4	
5		5. 자립을 체험 또는 경험하고 싶다.											0	1	2	3	4	

(SIS A를 일부 편집하여 제공하오니 장애인의 요구와 선호에 맞게 대상자 지원 시 참고)

- 지원정도척도(Support Intensity Scale-A. Version)

- SIS A(Supports Intensity Scale Adult Version)는 지적장애 또는 관련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상대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지적발달장애 학회에서 설계한 도구. 이는 사람 중심 계획 과정과 함께 사용되어 장애인의 요구와 선호에 반응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발하는 계획 팀을 지원하기 위한 것

- 출처(AAIDD, 2015. Supports Intensity Scale Adult Version User's Manual: 1)

※ (지원유형 심의 기준표 설명)

구분	내용
지원 유형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유형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0 : 지원 필요 없음 1 : 모니터링 필요(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여 그 사람이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2 : 언어 또는 제스처 자극을 요구하는 것 3 : 부분적으로 신체적 지원 필요 4 : 집중적인 유형의 신체적 지원 필요
빈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얼마나 자주 지원이 필요한가? 0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1 :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특별한 지원 필요 2 : 주 단위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매일은 아님 3 :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4 : 시간마다 그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함(추가 지원 없이는 한 시간도 해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나타냄)
일일 지원 시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일일 총 지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0 : 지원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 지원이 필요한 평균적인 날에 30분 미만의 지원이 제공됨 2 : 30분에서 2시간 미만의 지원 시간 3 :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 : 지원이 필요한 날에 4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함
자립 욕구	해당 개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욕구와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0 : 욕구가 전혀 없음 1 : 욕구가 일부 있으나 낮음 2 : 욕구가 있고 보통 3 : 욕구가 있고 높음 4 : 욕구가 있고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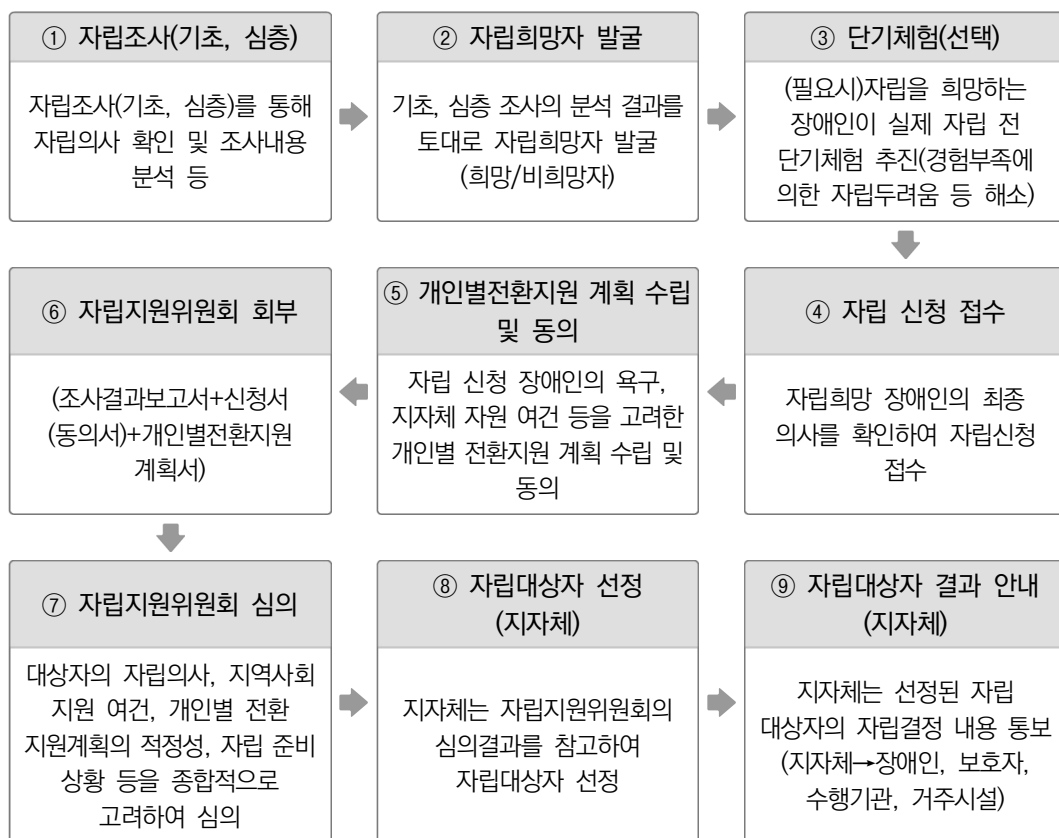
6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자립대상자를 선정
- 자립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하고 필요시 보호자, 수행기관, 거주시설 등에게도 안내 필요

* [서식17]_자립지원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서식18]_자립대상자 결정(선정, 변경, 종료) 안내서 활용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절차〉



7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사전 신청

○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사전 신청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서를 받은 즉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직업재활시설 참여, 후견인 지정, 건강주치의 연계 등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사전신청
 -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시설에서 자립 할 대상자의 공적 서비스 연계 시 시설 퇴소 전 연계 완료 추진
 - * 자립대상자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급여(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자립할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시설 전환 대상자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누락 시 유선 연락 등 조치 필요)
 - * 보장시설 퇴소 2개월 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전신청·조사 가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 등 관련 사업 안내 지침 참조

〈사회보장급여 및 사전 신청 서비스 예시〉

구분	지원서비스	신청기관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일자리	-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기초단체 - 직업재활기관
보건의료지원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건강주치의제도, - 보조기기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역별 의료기관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재산관리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익옹호	- 공공후견인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안심서비스	- 소방안전 및 재난 관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소방서 - 위탁운영기관

* [서식19]_자립대상자 사전연계 자원 및 서비스 목록표 활용

- ※ **(장애재판정 확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사전 신청 등을 위한 장애재판정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중복장애 등록 및 장애 정도 상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격 책정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통해 의뢰
- 영구장애로 등록된 경우 장애 재판정 불필요

[재판정 필요 대상]

- 의무적 재판정 : 재판정 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재판정(담당공무원 안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연금, 수당 등 개인별 사업 신청을 위함
- * 장애연금 또는 수당이 기책정된 자는 불필요

II

참고 ▶ 시범사업 대상자 주요 연계

구분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대상		• 일자리, 낮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한 장애인	• 의료 및 도전적 행동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자립 준비 단계	주거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조성(1명당 600만원 범위 내 지원)	
	자립정착금	• (지자체별 자체) 자립정착금 지원 * 전국 광역시도별 5백~15백만원 규모로 자체 지원 중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권익지원		• 공공후견인, 공공신탁제도 등	
주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자립지원 인력	• 지역당 5명 배치(대상자 4명당 전담인력 1명) •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지원	•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480시간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지자체별 추가 지원(지자체별 월 10~100시간 내외)	
		• 시범사업 추가 지원(+월 40시간)	• 시범사업 추가지원(+월 200시간)
	일자리 참여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참여 (가점 10점 적용)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점 10점 적용) • (본인희망시)직업적응 훈련시설 훈련 연계
	보건 의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연계	• 방문건강 관리사업 연계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 건강검진비 1명당 40만원 • 보조기기 구매 지원 1명당 300만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 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 및 신탁서비스 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지역주민활동 등 민간사업 등	
야간 및 긴급대응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 등 안전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사업 연계	

* 음영은 '24년 시범사업 별도 예산지원 사항

8 개인별 전환(이주) 지원

가.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 전환에 필요한 주택 물량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입주 계획 등을 수립

나. 주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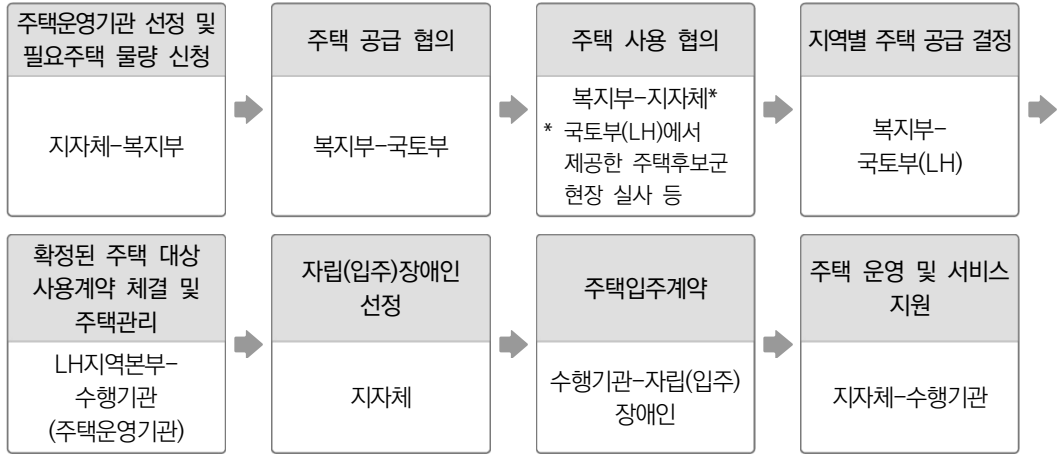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LH), 지자체는 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력하여 자립대상자의 주거 전환을 위한 주택 확보·공급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교통부(LH) 협의

- ① 시범사업 목표량(지자체 수요)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지자체 → 복지부 → 국토부(LH))
- ② 지역별 주택 공급 결정 및 사용 협의(LH↔복지부, 지자체)
- ③ 주택 사용 계약(LH↔지자체, 수행기관)
- ④ 자립(입주)장애인 선정(지자체)
- ⑤ 주택 입주 계약(수행기관↔ 자립(입주)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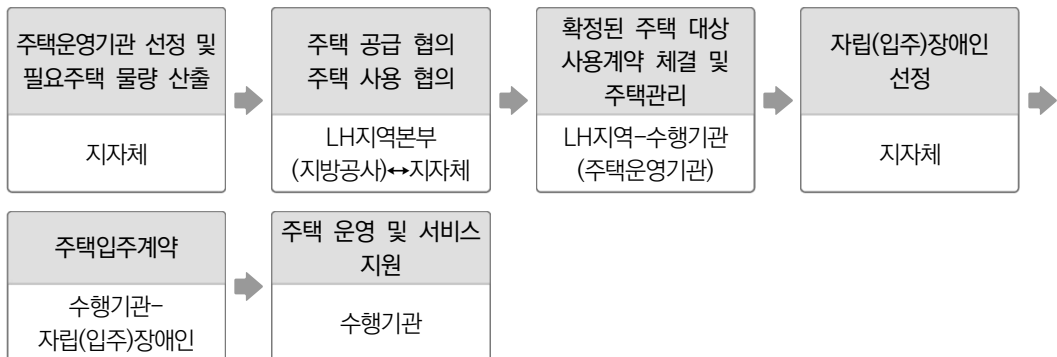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국토교통부(LH)-지자체(LH지역본부) 간 협의 절차〉



○ 지자체와 LH지역본부, 도시(개발) 공사 등 협의

- 지자체(수행기관)는 LH(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시범 사업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
-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목표량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
 - ① 시범사업 목표량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지자체 →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 ② 지역별 주택 공급 결정 및 사용 협의(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지자체)
 - ③ 주택 사용 계약(LH지역본부↔수행기관)→자립(입주)장애인 선정(지자체)
 - ④ 주택 입주 계약(수행기관↔ 자립(입주)장애인)

〈지자체와 LH지역본부, 도시(개발) 공사 등 협의절차〉



* 지자체는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주택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대상자가 거주할 임대주택의 계약 및 관리 등) 수행 능력을 고려

다. 주택 운영 및 관리

- 지자체(수행기관)는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입주하도록 계약 추진
 -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대상자의 주택 계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무주택자, 소득기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추진
 - * 입주할 장애인의 정서적인 사유(단독생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등)로 동거인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주택운영기관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개발)공사와 계약 후 대상자에게 제공 및 임대료 납부, 주택관리 등 주택 전반에 관한 사안을 관리
- 지자체(수행기관)는 지역적 상황으로 공공임대주택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세자금 지원 등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주거 확보

○ 자자체별 주택공급 연계 사례

- 지자체별로 공급사업자(LH, 지역공사 등)와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주택공급 방안, 임대보증금 지원 사항 등 지자체 사업 연계·활용
 - * ▲ LH-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 지역 내 민간임대아파트(전세보증금 지원), ▲ 민간임대주택(빈집 임차 및 리모델링 후 임대) 공급 등
- 주택 공급 시 공급사업자(LH, 지역공사 등)와 지자체 간 별도 임대조건* 설정 협의
 - * 예) △입주대상자를 시범사업 자립장애인으로 지정, △입주지정기간 연장, △계약금(개별 입주 시점에 보증금 납부), △입주 전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 주택 공급 및 임대조건 협약사례

□ 지자체-LH지역본부-수행기관 3자 협약에 따른 주택공급 사례

- (주택유형 및 지원호실)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등 LH매입임대주택 177호
- (공급사업자) LH지역본부
- (주요 협약사례)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12개월(다량의 주택이 공급되어 입주 시기가 다양한 경우)
 - 세대별 개별 입주 시 보증금 수납
 - 커뮤니티 공간(공공편의시설) 무상 공급(일부 지역)
 - 입주대상자를 시범사업 자립장애인으로 지정

* 주택 공급 및 임대조건 협약사례

□ 지자체와 지역공사 간 주택공급 사례

- (주택유형 및 지원호실) 다가구주택 10호
- (공급사업자) 지역공사, LH지역본부
- (연계사항)
 - 공급사업자와 기초지자체장의 주택 임대 계약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 지자체 지원

□ 전세주택 공급 사례

- (주택유형 및 지원호실) 아파트, LH전세임대 3호
- (공급사업자) LH지역본부
- (연계사항)
 - 장애인 개인 전세계약 및 LH전세임대대여금 7천만원

라. 주거환경 조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확보된 주거지를 장애유형·상태에 따른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 설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립대상자 전환 예정일에 맞추어 주거 환경 조성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 입주 전·후 주택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사업자(LH, 지역공사 등)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 ▲경사로, ▲단차 제거, ▲미닫이문, ▲바닥 미끄럼방지, ▲세면대 및 싱크대 높이 조절 ▲소음차단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대상자의 안전과 보완장치가 필요한 경우 자립 대상자와 상의하여 설치
 - * 가스차단기, 도어록, 방범창, 경고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수행기관 의뢰) 등
 -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세대 내 장애인편의증진 시설 설치
 -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체계 구축 및 소방 안전시설 설치
 - * [서식25] 자립대상자 안전 및 주택관리 모니터링 일지 활용
 - * [서식6] 사례회의록, [서식20] 자립대상자 인수인계확인서, [서식22] 자립대상자 개별지원일지 활용

마. 전환(이주) 지원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 전환(이전)을 위한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구매, 전입신고, 급여관리자 지정, 가스·인터넷 신청 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 대상자 자신의 선호를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 및 주거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자와 보호자(시설)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개인별 주거전환(이주) 지원 예시〉

전환 절차	지원 내용
전환 준비	1. 대상자의 자립 안내 (사는 곳, 동네 이름, 사회서비스 안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등) 2 자립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진행 (자립 선배 주택 방문, 독립 주거 가정 방문, 자립 동영상 시청 등) 3. 대상자의 준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 찾기, 사는 공간을 희망대로 공간 꾸미기 연습 등)
거주 전환	1. 사전지원 가. 가전제품 구입하고 배치하기 (대상자와 함께 주택가전과 집기를 구매하고 배치해보기) 나. 주택환경 조성 (대상자와 함께 살 곳에 대한 주택 환경 조성 - 도어락 설치, 방범창, 씽크대, 가스안전 장치, 보일러 확인 등) 다. 사회서비스 및 자원연계 (활동지원 자격책정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의뢰) * 장애재판정은 필수가 아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신청 재산관리, 식사지원, 주간활동,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전연계 가능한 서비스 신청 - 의사결정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공공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의 신청 고려 - 주택 계약, 입주 청소, 편의시설 주택개조 등 * 거주시설 퇴소 절차 지원(시설장애인의 경우) - 대상자 개인 물품 등 인수인계(통장 및 도장, 카드, 개인 자료 등) - 대상자 건강 관련 인수인계(건강진단서, 소견서, 약복용, 이용병원 정보, 검진 일정) - 대상자 특성 관련 인수인계(장애특성, 습관, 식사 상태 및 지원, 가족 상황, 지인 관계, 선호 활동 등) -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최근 건강검진결과, 진료 관련 등)는 반드시 확인

II

전환 절차	지원 내용
	2. 입주 지원 가. 이사지원 - 이사업체 선정 및 날짜 조율, 이사과정 안내, 짐싸기, 집 정리 등 나. 전입신고 - 주택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 등 신청 다. 조력자그룹 형성 - 지원기관, 제공인력, 활동지원사 등 조력자그룹 면담 및 당사자 이해 등
지역 내 거주를 위한 자립지원	1. 지역사회 생활 지원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보건의료 연계, 기관서비스 연계 등 2. 서비스 자체모니터링 - 대상자의 자립생활 만족도, 주거환경, 지역 내 관계 형성 정도, 서비스 연계 현황, 건강 상태 등)

9 대상자 모니터링

가. 퇴소 절차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시범사업 대상자 중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퇴소 절차를 모니터링 하여 자립 및 주거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 절차(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참고)〉

- *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지역사회 자립·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별첨 서식) 등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사례회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 시범사업에 적용(대상자 욕구, 필요 서비스 조정 등)

- * [서식6]_사례회의록 활용

다. 상시 모니터링(방문 및 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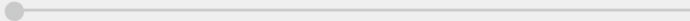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 주택 방문, 서비스 연계기관(일자리) 방문,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대상자의 만족도, 서비스의 적절성 및 연계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 * [서식22]_자립대상자 개별지원일지, [서식23]_자립대상자 모니터링 결과, [서식24]_자립대상자 삶의 질 만족도 조사지 활용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행정 사항 및 지원 사항

I.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1. 시범사업 2024년 예산 개요
2. 세부 집행 기준

II.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협조

1. 시범사업 전문 교육
2.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3.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 등

III. 자립지원 관련 연계서비스

I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1 시범사업 2024년 예산 개요

▶ 2024년 전체 시범사업 예산

- 보조사업명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국고 보조율 : 50%
- 보조 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 예산 내역 : 총 11,7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구분	내역
인건비	• 자립지원 전담인력 기본급, 제수당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자산취득비 • 회의비 • 여비 등
사업비	(주요 기본제공 사업) • 주거환경조성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비 • 보조기기 구매 지원 • 건강검진비 • 단기체험비 등

- * 지자체는 연차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자립목표치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간 지역별 여건, 대상자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배정 가능(탄력적 예산 배정 시 구체적 사유 및 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 *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단기체험 과정 등)로 집행 가능
- * 국비 및 지방비 포함(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자체 예산 추가 편성 가능)

I

2 세부 집행 기준

㉮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 기본급, 제수당,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구분	내역	비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 기본급 : 4급5호봉 기본급 지원(호봉X) • 제수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 정액급식비 월 10만원(비과세)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본사업 시행시 호봉인정 검토

- (기본급) 월 2,321,900원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보건복지부)-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4급 5호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책정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를 소지한 경우 유사경력으로 80%인정

- (제수당)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적용하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인 전담인력 대상으로 지급, 기본급의 60%, 설, 추석(연 2회)

* 가족수당 지급기준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등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고)

* 가족수당 지급 제외 : 국고 또는 지방비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배우자의 근무 기관 정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사항을 분기별 확인 필요,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시간외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대우수당, 선임전담인력 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 월 최대 20시간 인정, 단 자립대상자가 주택 입주 후 전담인력의 서비스가 지원되는 경우(야간·휴일 지원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월 최대 30시간까지 인정(근로기준법 준수,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 시간외 수당 집행 시 시간외 근무계획 → 기관승인을 득하여 집행(대상자 긴급 지원으로 불가피한 경우 선 근무 후 승인)

* 대우수당 지급기준 : 월 5만원, 시범사업 만 1년 근속한 전담인력 대상으로 근속된 날의 익월부터 지급 가능

* 선임전담인력 수당 지급기준 : 월 10만원, 지자체의 승인(지정)을 받은 선임전담인력 대상으로 지급 가능(선임전담인력 선정은 전담인력 배치 및 보수 기준 참조)

- 정액급식비 : 월 10만원, 전담인력 정액급식비 지급

- 퇴직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퇴직적립금 반환처리,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 가능
- *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 운영비 : 자립지원 인력 1명당 월 40만원

- 시범사업과 무관한 운영비 집행 불가

구분	내역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복합기 임대료, 수수료, 조사참여수당, 외부교육 참가비 등
회의비	• 회의 참가수당, 회의진행 다과비 등
여비	• 사업 수행 목적의 회의, 교육 등 출장 여비 등
자산취득비	• 전담인력용 책상, 컴퓨터 구입 등(에어컨, 냉장고 등 시범사업 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물품 제외)

- * (여비지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출장여비는 월 운영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외부교육 참여, 타 기관 견학, 직원 연수 및 워크숍 등 주최 또는 참여 시 사업계획서 첨부한 출장신청서 및 결과 보고(공무원 여비 기준 적용)
- * 조사 참여 수당 : 자립조사(기초, 심층)에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1명당 3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 * 자립조사 및 보호자 설명 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조사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지원의 범위 내에서 태블릿 PC 구입 가능 (전담인력 1명당 1대 제한, 비품등록 등의 자산관리 필수)
- * 사무실 및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공간 임차료는 운영비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단, 법인 또는 제공기관 소유 건물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존 임대료를 시범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
- * 주거 및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공과금 등)은 당사자 부담 원칙(단, 주택 계약 시 지정한 입주일에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하여 발생한 공실료는 시범사업비로 집행 가능)

○ 사업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간 지역별 여건, 대상자의 규모,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배정 가능

- (주거환경조성) '24년 신규대상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

- 화재예방, 위급 시 대피용 설비, 안심서비스(현관문 앞 보안 CCTV) 등 자립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의 설비 설치 및 집행(스프링클러, 방염벽지, 방염커튼, 소화기 등)
- 주택임대보증금 납부, 자립 초기 생활필수품(가전, 가구, 주방용품 등) 구입 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되, 자립정착금(지자체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닌 장애인(재가장애인 등)의 경우, 대상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 * 사전 협의 시 대상자의 주거 및 재정 상황, 필요 지원 내역 등 자료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1명당 월평균 80시간

- 지역당 총 배정된 시간 내에서 지원모형에 따라 운영하되, 자립대상자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활동지원시간의 탄력적 배정 가능(보건 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 '24년 1시간 단가 16,150원

* 장애인 4명 기준 : (집중지원형) 1명 최대 200시간, (자립지원형) 3명 40시간

- 시범사업 대상자 중 활동지원 △수급자, △수급자격 대기자,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결과 탈락), △제외대상자, △의료적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 △단기 체험 대상자 등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

구분	대상자	지급기간	월 한도시간
활동지원수급자	자립대상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시범사업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람	- 시범사업 기간 내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유지에 필요한 기간까지	유형별 지원 (자립형 40시간, 집중형 200시간)
활동지원수급자격 대기자	자립대상자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 시범사업 기간 내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급여 개시 전까지	월 최대 200시간
활동지원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결과탈락)	자립대상자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수급 자격이 불 인정 된 사람	- 시범사업 기간 내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유지에 필요한 기간까지	월 최대 40시간
활동지원 제외대상자	자립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사람	- 시범사업 기간 내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유지에 필요한 기간까지	월 최대 200시간
의료적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	자립대상자 중 욕창, 골절, 심리 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	- 시범사업 기간 내 필요일로 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최대 200시간
단기체험대상자	자립을 희망하여 단기체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 시범사업 단기체험 기간	일 최대 12시간

* 65세 이상 자립자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활동지원 추가지원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함(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보전급여 참조)

* 추가지원 대상자 중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상황(질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만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 활동지원 추가지원 가능(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추가로 활동보조·방문목욕·간호서비스 등 제공

- 모형별 지원(집중지원형, 자립지원형)을 통해 일상생활, 긴급상황 등 지원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통해 시범 사업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연계(방문간호 및 장기요양 등 동일)
- * 대상자에게 매칭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자로 파견받아 매칭 (자격, 교육 등 인력관리 책임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서식 활용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서식_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급여제공일정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제공 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을 적극 활용

- (예산집행 방식)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행방식 결정
 - * 예시) 대상자에게 매칭된 활동지원사를 파견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월 단위로 계약이체 방식의 사업비 집행
- 대상자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 (보조기기 구매 지원) '24년 신규대상자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 및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교부와 사례관리 서비스 등 지원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보조기기 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보조 기기 구매 지원
 - * 정부지원보조기기 지원 품목 이외의 장애상태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구 구입 가능하며, 본인 사용 여부 등 자체 점검 필수
- (건강검진비) 대상자 1명당 40만원
 -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으로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의 장애재판정, 서비스종합조사 등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 비급여 항목 의료비 등 검사항목 발생 시 비용지원
 - *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 사업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검사비 지원 등) 그 차액에 대하여 지원 가능
 -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그 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과 연계

- (단기체험비 등) 활동지원서비스, 개별 단기체험비, 주택 마련 시 월세 지원 등 시범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구분	단기체험	참조
인건비	- 체험주택 2호당(2인 1실, 4명 입주) 전담인력 1명 인건비 지원	4:1배치 후 추가지원 필요 시
운영비	- 주택 마련에 따른 월세(지역별 시세에 따라 협의) 및 공과금 등 지원 - 회의 운영비,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의 수용비 및 수수료	
사업비	- 활동지원서비스 1일 12시간 (16,150원*12h*7일=1,356천원) - 개별 체험비 1일 5만원(식비, 다과비, 활동비 등) - 주택 마련에 따른 주거환경조성 지원(협의) - 자립교육 등	* 체험비 상한액 초과분은 자부담 및 지자체 추가지원 가능 * 개별세면도구 자부담

- (추가지원) 지자체는 시범사업 지원 외의 추가적인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지자체 추가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사업 운영 가능
- (지도점검 실시) 지자체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 [서식27]_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서식28]_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 (모니터링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은 자립형, 집중지원형 등의 유형 선정기준, 지원시간 배정사유 등 지역별 서비스 기준 책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25년 사업 기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실시
 - * [서식29]_시범사업 모니터링 점검표 [서식30]_시범사업 평가조사표

» 유의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 시범사업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기관 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범사업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및 정보공시 등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시범사업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품 등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비품관리대장 및 취득자료 등(물품사진, 견적서 등)을 구비하고 철저히 관리(정기점검 및 현행화 등)해야 함
- 지자체는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이나 시범사업 대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II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협조

1 시범사업 전문 교육

가. 시범사업 전문 교육

- **(목적)**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정에 대한 담당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운영
- **(교육대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시범사업 실무책임자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대상
- **(전문교육)**
 - (교육방식)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집합 및 온라인 교육 제공
 - (교육 내용) 기본교육, 심화교육

구분	교육과정		비고
	기본(이론+실무)	심화	
대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수행기관 실무책임자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주기	연 2회	연 1회	매년 필수 이수
교육일정	5월~6월 중	8월~10월 중	* 교육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교육주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세부 내용) 발달장애의 이해과정, 공적자원 연계 내용 및 과정, 자립 지원 절차의 실제,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개인별 자립지원 사례 등

〈시범사업 전문교육 과정 예시〉

구분	교육 내용		비고
기본교육	이론	시범사업의 이해	
		발달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	
		자립지원 공적서비스 연계(연금,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	

구분	교육 내용	비고
	후견인제도와 재산관리서비스	현장 컨설팅/ 집합 or 온라인 교육
	전환서비스의 이해, 주택 확보 등 관리·지원	
	자립조사 운영 및 단기체험 등의 대상자 발굴 과정	
	개인별전환 지원계획 수립	
	이주지원 및 개인별자립지원 서비스 사전 연계	
	발달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 사례	
	점검 및 서비스 재수립 등 모니터링	
	주거관리의 실제	
	개인별 자립지원 사례 공유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인문학	
심화교육	역할극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사례	
	전담인력 소분과 회의	

- **(외부 기관 직무 관련 교육 및 자체교육)**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 및 자체교육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례관리 관련 외부기관 교육 등

- (사회서비스 연계 및 법정 의무 교육) 자립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 선정 이후 즉시 공적서비스 자격채정을 위한 신청서류·방법·채정기간 등의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개인정보, 직장내 성희롱예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퇴직연금) 등 전담인력 및 읍·면·동 접수 담당자 교육 실시

* 제4편 Ⅲ. 자립지원 관련 연계서비스 참고

- **(지자체 공무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
- **(자립조사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전담인력, 자립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전반의 운영과정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자립조사의 이해, 운영과정, 조사원의 역할, 조사 방법 등

* 전담인력은 공통과정만 참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립조사원은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시

〈자립조사 교육과정 예시〉

구분	교육 내용	구분	비고
자립조사 교육과정	시범사업의 이해	외부조사원 참여과정	온라인 교육
	발달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자립조사 운영과정 및 조사 방법	외부조사원+ 전담인력참여 과정	
	자립조사원의 역할 및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2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가. 시범사업 컨설팅 지원

- (목적) 신규 사업추진 자자체 및 수행기관의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
- (지원일정) 2024. 3.~ 11.
- (지원 대상 및 지원기관)
 - (대상) 신규 사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 (지원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운영방식)
 - 시범사업 설명회, 자립조사 운영 등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

나.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목적) 시범사업 운영 과정, 목표 달성 및 운영 실태, 자립정착 상황, 만족도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로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체계 마련 등
- (운영일정) 2024년 연중
- (내용)
 - 개인별 자립 정착 상황, 자립지원 경로 및 환경조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 운영의 충실성 및 적정성 등

3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 등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계획,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전담인력 채용, 주택확보 현황,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 시범사업 대상자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경위 및 계획을 보고
- 자립대상자 관련 문서 및 파일, 취득자산 등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관리하게 된 자료, 물품 등에 대한 현황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필요

II

III

자립지원 관련 연계서비스

1 공적서비스

가. 장애재판정

- 재판정은 필수가 아니며, 장애정도 상향 등 필요시 요청
 - 재판정 필요대상
 - 의무적 재판정 : 재판정 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재판정(담당공무원 안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개별 사업 신청을 위한
- * tip> 수당지원 대상자를 장애연금 수급자로책정하기 위한 장애등록 시 장애상태에 따라 등급제외(장애 탈락) 등 판정 될 수 있으니, 활동지원 신청 후 병원기록지 등 확인 후 요청

나.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 (지원 대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8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
- * 종전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원내용) 기초급여(최대 334,810원)+부가급여(30,000~424,810원)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9만원	424,810원 ¹⁾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²⁾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³⁾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참고 관계 공무원 직권신청 권고(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 (의의)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직권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로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변경된 자 등

○ 장애수당(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기존 3급~6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월 6만원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 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관할 공무원 직권신청(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 장애아동수당(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 (지원대상)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지원내용) 월3만원~월22만원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할 것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산(소득인정액)하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 * 기준액(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
(‘24년 현재 1인가구 기준액 71만3,102원)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24년 1인가구 106만9,654원) 가구에 대하여 지역별 임대료 차등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수선 지원
 - * 생계·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생계급여의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지급 제외)
- (시설입소자 자격관리) 시설수급자의 경우 퇴소즉시 거주할 주거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지에서 자격이 변경되었는지 자격(일반수급자)변경확인
 - *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때는 급여의 50% 지급, 정부양곡 신청 필요
- 주거급여자격 책정을 위해 주거급여 조사의뢰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대행)신청서 작성 신청하여 감면 혜택 연계

다. 일자리 활동

○ 장애인일자리

- (지원대상) **일반형**(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복지형**(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사업년도 기준 전공과 학생), **특화형**(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
- (지원내용)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연계
- (신청방법) 매년 11월~12월경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 해당 시군구 모집공고 참조(시군구 필요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직업재활시설

- (지원대상) 일반사업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
- (지원내용)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생활** 등 지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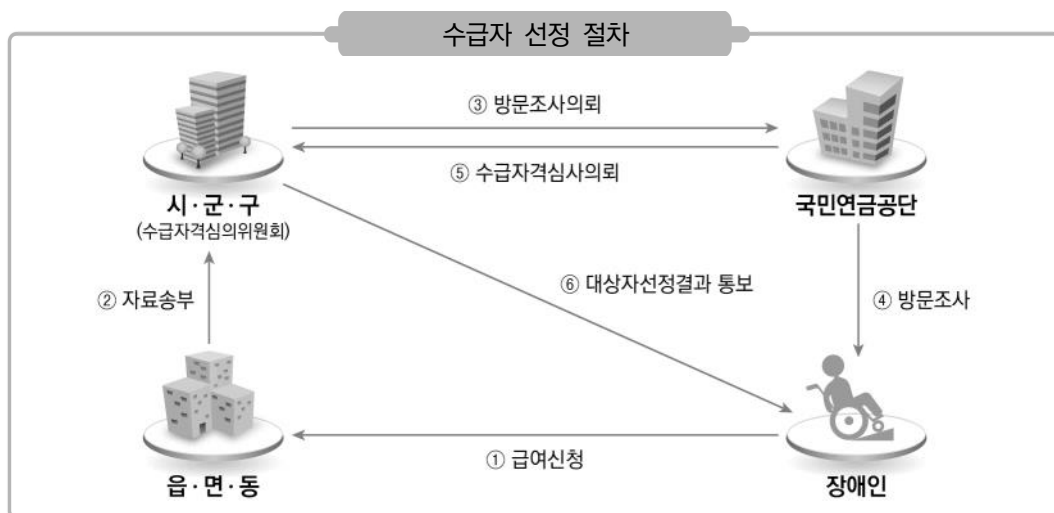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지원내용)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 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와 취업 지원
 - * 전국 직업재활수행기관 171개소, 전문인력 322명 지원 중
- (신청방법) 거주지 소재 수행기관에 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가능)
 - * 지자체에 따라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인근 지역 수행기관에 신청 가능

라. 일상생활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방문목욕·간호서비스 등 제공

- ① (국비지원)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구간 판정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월별로 약 60시간~480시간 상당의 **바우처 지원**(주간 활동보조 급여비용 기준)
 - 신청 절차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직접 방문 및 팩스·우편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 신청 후 서류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이 방문조사(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군·구(수급자격심의회)에서 급여 대상선정 및 통보



-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 신청 필요
- 긴급활동지원(등급결정전 60일), 시설퇴소 시 **특별지원급여 지원**(6개월, + 월 20시간)
- 시설거주 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필요한 병원 서류 등을 준비하고 최소 주거전환일 2개월 전 활동지원 신청

② **(지자체 추가지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와상, 자녀양육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100~350시간), 부산(20~450시간), 대구(20~300시간) 등 추가 지원 중

③ **(시범사업 추가지원)** 돌봄 필요성 등에 따라 모형별로 **추가지원(월 10~40/200시간)**을 통해 **일상돌봄, 긴급상황 등 지원**

- **자립지원형**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월 10~40시간 범위**에서 지원
- **집중지원형**은 **월 200시간** 추가지원

* 사업비 지급은 지자체로 지원

* 제공일지 서식 제공

마.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 (지원대상)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신청 가능(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낮 시간의 활동**(독서, 산책, 체육, 음악, 미술 등)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 기본(132시간)·확장형(176시간) 2가지 유형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이용자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 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월 22시간 차감

- 중복장애, 신변처리 어려움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1인 집중지원 서비스 제공**

* 집중지원 서비스는 기본단가(16,150원)에 50%(8,070원)를 가산(24,220원)

- (신청절차)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소요시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사회참여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전국 43개소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제공 중(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등), 제공기관에 신청

○ 장애인 생활체육

- (지원내용) 요가, 수영, 사이클 등 특수 전문 체육 종목들을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체육 지원

○ 지자체 자체사업

- (지원내용) 각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 중인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과 자조모임 지원 등

○ 민간연계

- (지원내용)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 연계, 취미활동 프로그램 참여, 인식개선사업 활동 및 지역주민조직 활동(통반장, 이웃관계 등)

* 공동체 형성 및 자조모임 등 권익옹호, 문화·생활체육 등 지원프로그램

사. 보건의료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원대상) 장애인, 재가장애인, 여성장애인, 예비장애인 등
-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지역장애인 등록관리,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등),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지원 연계(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장애인 건강증진, 교육사업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 운영 중

○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 (지원내용) 연 1회 1명당 40만원 비용 지원(시범사업 별도)

*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병원급 이상 19개소)과 연계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지원내용) 전국 261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을 통해 사례관리, 자조 모임 참여 등 장애인 건강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지원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중 심각한 자해나 타해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발달증진프로그램, 행동평가, 문제행동 프로그램, 부모교육,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언어평가 및 치료, 지역사회 연계 등

*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충북, 전북, 제주 지역 내 12개소 지정

● 건강주치의 제도

- (지원대상)
 - (건강주치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24.2.28.~)
 - (치과주치의) 중증장애인 +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서비스 유형)
 - (건강주치의)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서비스(의원),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 주 장애관리서비스(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일반건강 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함께 받는 통합관리서비스(의원)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의료기관
 -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원 및 병원급)
- (서비스 내용)
 - (건강주치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방문서비스(진료+간호),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
 - (치과주치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 (신청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www.nhis.or.kr)을 통해 주변 병원을 검색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받은 대상 지원
- (지원내용) 지역 보조기기 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 및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교부와 사례관리 서비스 등 지원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보조기기 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1명당 최대 300만원의 보조기기 구매 지원(시범사업 별도)

* 기존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의 대기수요 등 고려하여 시범사업 별도 지원

아. 권익옹호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원대상) 의사결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법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 필요 대상 발굴 부터 후견심판청구 등 전 과정 지원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청구비용(1명당 연 최대 50만원), 제3자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활동비 월 최대 50만원)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진행절차 : 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후견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결정 → 서비스 이용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시설 거주 및 재가 발달장애인 등
- (지원내용) 신탁계약 및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III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asksupport@hanmail.net)으로 접수

* 신청서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 또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상담 : 1544-6912

- 진행절차 : 서비스 신청 → 방문 상담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설계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원대상) 학대 피해장애인 등 지원
- (지원내용)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 문의·상담 : 02-6951-179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https://www.naapd.or.kr>)

자. 야간 등 긴급상황 대응

○ 자립지원 전담인력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 야간 순회 및 긴급상황 대응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취약가구이거나, 그 외 장애인은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화재·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의 연계*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벨 누를 수 있도록 사전 훈련, 장시간 실내 움직임 미감지 시 자립지원 전담인력 통해 확인

○ 지역기관 연계

- 소방서 안전 점검, 경찰서(또는 파출소) 등 협조요청

* (예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지역 내 경찰서에 실종예방 지문등록, 실종 시 긴급대처 요청 등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지원사, 이웃관계망 형성, 지자체별 특성화 사업 개발
및 확산(서울시 야간순회서비스, 활동지원사 24시간 지원서비스 등)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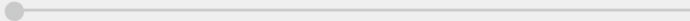
- 현관 문열림 도어센서 설치, 자립지원 전담인력 명함·키즈폰·배회감지기(GPS) 등
소지, 현관 앞 CCTV 설치 등

III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4

관련 서식 및 부록

* 관련 서식 안내

본 지침의 제공 서식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식으로 각 지자체 상황과 장애인 지원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 하는 범위 내 수정 활용 가능합니다.

서식NO	서식명	쪽수	활용 주체	비고
1	자립 기초조사지	87	수행기관	-변경
2	자립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94	수행기관	-변경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95	공통	-변경
3-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및 신청 대리인 위임장	97	공통	-신설
4	자립 심층조사지	98	수행기관	-변경
5	자립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102	수행기관	-변경
6	사례 회의록	104	수행기관	
7	초상권 사용 동의서	105	공통	-신설
8	단기체험 신청서	106	수행기관	-신설
9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107	수행기관	-신설
10	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109	수행기관	-신설
11	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110	수행기관	-신설
12	단기체험 설문지(보호자용)	112	수행기관	-신설
13	단기체험 결과보고서	113	수행기관	-신설
1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서	118	공통	-변경
1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	120	공통	-변경
16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121	수행기관	
17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124	공통	
18	자립대상자 결정(선정, 변경, 종료) 안내서	125	지자체	
19	자립대상자 사전연계 자원 및 서비스 목록표	126	수행기관	-변경

서식NO	서식명	쪽수	활용 주체	비고
20	자립대상자 인수인계 확인서	128	수행기관	-변경
21	서비스 의뢰 요청서	129	수행기관	-신설
22	자립대상자 개인별 지원일지	130	수행기관	
23	자립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131	수행기관	
24	자립대상자 삶의 질 만족도 조사지	132	공통	-변경
25	자립대상자 안전 및 주택 안전 관리 등 점검표	133	수행기관	-변경
26	사고보고서	135	공통	-신설
27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136	지자체	-변경
28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39	지자체	-변경
29	시범사업 현장모니터링 점검표	141	지자체	
30	시범사업 평가조사표	142	지자체	
31	시범사업 세부이행계획서	143	공통	-변경
32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49	공통	-변경
부록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156		
	2. 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신청 관련 법령	167		
	3. 주거관련 제도 안내	173		

서식1 자립 기초조사지(조사원 작성)

I. 자립 기초조사지

자립 기초조사는 현재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학대피해 쉼터 ▲단기거주시설 거주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의 복지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자립서비스 욕구 및 선호도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목적 이외의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립 기초조사지 작성방법〉

1. 조사지 구성

- 본 조사지는 「장애인 기초정보», 「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실태», 「지원 요구 정도 및 자립 욕구 조사」 3개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정보	성명,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수급 유무, 연고 유무, 건강상태 등
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실태	시설입소경위, 시설입소기간, 시설이용요금, 평일 낮시간 주요 활동, 참여 프로그램, 자립체험 경험 여부 및 기간, 지역 등 연계기관 이용 경험 등
지원 요구 정도 및 자립 욕구 조사	생활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활동, 건강 및 안전지원, 사회 활동, 권익옹호, 자립욕구

2. 작성 방법

- 질문의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도 최대한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실제로 관찰한 값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

--	--	--

제 4 편

2. 시설이용 실태

1. 시설 입소경위	① 무연고, 무의탁 ② 가족의 의뢰 ③ 본인의 선택
2. 시설 입소기간	① 본 시설 입소기간 : ()년 ()개월 ② 이전에 있던 시설부터 본 시설까지 총 입소기간 : ()년 ()개월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은 해당사항 없음
3. 시설이용 요금	① 무료 이용자 ② 실비 이용자
4. 평일 주요 낮 활동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항목 3가지 순서대로-괄호 안 숫자로 표시)	① () 학교 (학교명:) ② () 직업활동(보호작업장 포함/보호작업장명:) ③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 활동() ④ () TV시청(좋아하는 프로그램:) ⑤ () 노트북, 스마트기기, 핸드폰 사용 ⑥ () 개인여가활동() ⑦ () 기타()
5. 시설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중복 선택)	① 기초생활지도(위생관리, 식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사관리 등) ② 사회적응훈련(편의시설 이용, 대인관계, 체험프로그램, 예절교육, 성교육 등) ③ 재활치료(수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④ 특별교육(청능훈련, 보행훈련, 점자교육, 수화교육 등) ⑤ 직업재활(직업평가, 직업전 훈련, 기술훈련, 지원고용, 보호작업장, 취업 등) ⑥ 학습지도(방과후학습지도, 방학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⑦ 취미·여가활동(취미교실, 영화관람, 여행,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⑧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예비과정 ⑨ 거주시설 체험홈 ⑩ 기타()
6. 자립체험 경험 및 교육 여부/기간	☐ 유 ①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 ~ . .) ②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자립생활주택)(. . ~ . .) ③ 자립교육(. . ~ . .) ④ 기타 (. . ~ . .) ☐ 무
7. 지역 등 연계기관/ 참여 경험 (중복 선택)	① IL센터 등과 연계되어 동료상담, ILP 참여 (기관명:) ② 복지관 등 지역 서비스 이용 경험 (기관명 / 프로그램 : 연 회) ③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지원 ④ 기타 ()

2-1. 지역사회 이용실태(*시설장애인 외 해당)

1. 시설 입소 희망 사유	① 경제적 사유 ② 가족의 부재(사망 또는 입원 등) ③ 본인의 선택 ④ 재입소 ⑤ 기타(사유 : _____)
2. 지역사회 거주기간	① 지역사회 거주 기간 : ()년 ()개월 ② 시설 입소 경험 유무 : ☐ 유 ☐ 무 ③ 기간 : ()년 ()개월
3. 소득구분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차상위 및 차차상위 ③일반
4. 가족관계	① 부모 ② 조부모 ③한부모 ④형제자매 ⑤친인척 ⑥기타 ()
5. 평일 주요 낮 활동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항목 3가지 순서대로 괄호 안 숫자로 표시)	① () 학교 (학교명: _____) ② () 직업활동(보호작업장 포함/보호작업장명: _____) ③ () 복지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④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 활동() ⑤ () TV시청(좋아하는 프로그램:) ⑥ () 노트북, 스마트폰, 핸드폰 사용 ⑦ () 개인여가활동() ⑧ () 주간보호시설() ⑨ () 기타() ⑩ 해당없음
6. 지역사회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중복 선택)	① 활동지원서비스 ② 주간활동서비스 ③ 재활치료(수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④ 직업재활(직업평가, 직업전 훈련, 기술훈련, 지원고용, 보호작업장, 취업 등) ⑤ 학습지도(방과후학습지도, 방학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⑥ 취미·여가활동(취미교실, 영화관람, 여행,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⑦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예비과정 ⑧ 기타()
7. 자립체험 경험 및 교육 여부/기간	☐ 유 ①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 ~ . .) ②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자립생활주택)(. . ~ . .) ③ 자립교육 ④ 기타 (. . ~ . .) ☐ 무
8. 지역 등 연계기관/ 참여 경험 (중복 선택)	① IL센터 등과 연계되어 동료상담, ILP 참여 (기관명:) ② 복지관 등 지역 서비스 이용 경험 (기관명 / 프로그램 : 연 회) ③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지원 ④ 기타 ()
9. 장애인(보호자)이 가정 등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구체적 기술)	장애정도 및 특성(도전적행동), 심리·정서, 건강, 사회적응, 대인관계, 이웃 및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서비스 수급 어려움 등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

3. 지원 요구 정도 및 자립 욕구 조사

지원내용			지원유형				빈도				일일 지원시간				점수		
1	Ⅰ. 생활지원	1. 화장실 이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옷 입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음식 준비 및 식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목욕 및 개인위생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가사 및 청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Ⅱ.일자리 지원	1. 일자리/직업 편의 접근 이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동료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관리자/코치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직무 습득 및 익힘 정도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직무 도움 얻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Ⅲ. 지역 사회 활동	1. 지역사회 내 장소 이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지역사회 여가활동 참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선호하는 지역사회 활동 (교회, 사회복지기관 등)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공공서비스 접근 및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쇼핑 및 상품 구매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Ⅳ. 건강 및 안전지원	1. 약물복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보행 및 이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건강 및 안전 위험 방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건강서비스 및 영양가 식단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정신적 안녕 유지 및 신체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Ⅴ. 사회활동	1. 타인과 함께 교류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친구사귀고 유지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다른사람과 개인적 대화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친목활동 및 시설 밖 사교활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적절한 사회기술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Ⅵ. 권익옹호	1. 자기자신을 옹호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선택과 결정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돈 관리 및 재정관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법적/시민적 책임 수행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자립욕구													욕구정도				점수
1	Ⅶ. 자립욕구	1. 시설 또는 집(원가정)에서 나가고 싶다.										0	1	2	3	4	
2		2. 혼자 또는 누군가(내가 원하는 사람)와 같이 살고 싶다.										0	1	2	3	4	
3		3. 나만의 집 또는 공간을 갖고 싶다.										0	1	2	3	4	
4		4. 자유롭게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0	1	2	3	4	
5		5. 자립을 체험 또는 경험하고 싶다.										0	1	2	3	4	

(SIS A를 일부 편집하여 제공하오니 장애인의 요구와 선호에 맞게 대상자 지원 시 참고)

- 지원정도척도(Support Intensity Scale-A. Version)

- SIS A(Supports Intensity Scale Adult Version)는 지적장애 또는 관련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상대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지적발달장애 학회에서 설계한 도구. 이는 사람 중심 계획 과정과 함께 사용되어 장애인의 요구와 선호에 반응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발하는 계획 팀을 지원하기 위한 것

- 출처(AAIDD, 2015. Supports Intensity Scale Adult Version User's Manual: 1)

〈지원 요구 정도 및 자립 욕구 작성방법〉

구분	내용
지원 유형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유형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0 : 지원 필요 없음 1 : 모니터링 필요(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여 그 사람이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2 : 언어 또는 제스처 자극을 요구하는 것 3 : 부분적으로 신체적 지원 필요 4 : 집중적인 유형의 신체적 지원 필요
빈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얼마나 자주 지원이 필요한가? 0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1 :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특별한 지원 필요 2 : 주 단위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매일은 아님 3 :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4 : 시간마다 그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함(추가 지원 없이는 한 시간도 해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나타냄)
일일 지원 시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일일 총 지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0 : 지원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 지원이 필요한 평균적인 날에 30분 미만의 지원이 제공됨 2 : 30분에서 2시간 미만의 지원 시간 3 :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 : 지원이 필요한 날에 4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함
자립 욕구	해당 개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욕구와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0 : 욕구가 전혀 없음 1 : 욕구가 일부 있으나 낮음 2 : 욕구가 있고 보통 3 : 욕구가 있고 높음 4 : 욕구가 있고 매우 높음

서식2 자립 기초조사 결과보고서(조사원 작성)

자립 기초조사 결과보고

		작성자(작성일)	()
성명		성별	
나이(생년월일)	만 세 (yyyy . mm . dd)	장애명·정도	
		의사소통수단	☐ 음성 ☐ 수어 ☐ 필담 ☐ AAC(보완대체소통) ☐ 몸짓 ☐ 기타()
거주유형	☐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학대피해쉼터 ☐ 재가장애인 ☐ 기타 ()		

항목		기초조사 내용
장애인의 자립육구		- 낮활동, 지역연계 경험 등 기록 - 당사자의 자립 욕구 유무에 대한 기재 - 지원자가 생각하는 당사자의 자립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지원
시설 또는 원가정 등에서의 주요생활		-
장애인의 기초정보	거주기간 (시설 등)	
	입소사유	
	연고유무 및 보호지지체계	
	건강상태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최근 건강검진결과, 진료 관련 등)를 참고하여 기술 - 진료내용, 진료주기, 복용약, 복용주기 등
	도전적행동	
	(재가장애인만 해당) 부양(돌봄) 및 주거상황등	
	특이사항	
지원방향 (시설담당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기록 반영)		- 종합적인 지원방향 기록

첨부서류	1. 자립 기초조사지 2.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포함
------	---

서식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수정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장애등록 여부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시범사업 관련 서식 및 의학적 건강정보(질환, 수술병력, 복용약, 병원 진료, 도전적행동 등), 서비스 이용 실태(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실태 정보 등, 입소경위 및 입소 희망 사유, 입소 및 지역사회 거주기간, 이용요금, 평일 주요 낮활동, 시설 및 지역 참여 프로그램, 거주시설 외 경험/기간 등) 등 시범사업 참여 및 연구 참여에 필요한 항목 *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을 위한 내용 포함(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연계·조정 결과 등 포함) ③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이용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및 의료기관, (해당기관 추가 가능)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자립대상자 발굴,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서비스 내용 모니터링 등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③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장애등록 여부 ④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⑤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5.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내역 ①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이용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및 의료기관, (해당기관 추가 가능) ②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자립대상자 발굴,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서비스 내용 모니터링 등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 동의함 ☐

③ 제3자가 제공받는 민감정보의 항목 : 시범사업 관련 서식 및 의학적 건강정보(질환, 수술병력, 복용약, 병원진료, 도전적행동 등), 서비스 이용 실태(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실태 정보 등, 입소경위 및 입소 희망사유, 입소 및 지역사회 거주기간, 이용요금, 평일 주요 낮활동, 시설 및 지역 참여 프로그램, 거주 시설 외 경험/기간 등) * 시범사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내용 포함(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연계·조정 결과 등 포함) ④ 제3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⑤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안함
--	------

※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대리인	성명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기타()	
내역			확 인 (√ 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리인 정보(성명,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발달장애인법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하며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및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증빙서류 확인방법
신청인(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가족)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대리인의 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수행기관장 귀중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청 대리인 위임장				
신청자 (본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위 수급자(본인)은 아래의 대리인에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합니다.				
신청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기타()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은 본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서식4 자립 심층조사지(장애인 당사자 조사)

□ 기본정보

장애인 당사자		조사원	
일 시		장 소	
조사원 / 소속 및 직책		자립의지 및 욕구 정도	
1	000시 장애인복지과 000주무관	최근 퇴행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당사자의 잔존기능 활용 및 강점 강화를 위한 단기체험 지원을 권함.	
2	000기관 000전담인력		

□ 조사 시작 전 읽어주세요

- ① 조사에 응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다 라는 전제로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장애인 당사자를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 ② 장애인 당사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거주시설의 직원이 조사과정에 함께할 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계자와 이야기를 시작해주세요
- ⑤ 장애인 당사자의 속도에 맞춰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쉬운 자료(동영상, 그림자료, 이모티콘 등)를 활용해 이야기해 주세요.
- ⑥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진심 어린 존중과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 인사나누기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000 님에게 자립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시설에서 사시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조사하러 온 000 사회복지사(동료조사가)예요.
- 000님 제가 자립서비스 안내를 하고 질문을 몇가지 할 텐데 괜찮으실까요?
- 혹시 대답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말로 하기 어렵거나 싫으시면 고개만 끄덕이셔도 괜찮아요. 글씨를 쓰시거나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으니 000 님이 좋은 방법으로 대답해주세요
- 그리고 000 님의 이야기를 옆에 계신 000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으실까요?
- 오늘 옆에 계신 000 선생님은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 장애인 당사자의 강점(좋은 점)

문	항	조사기록
조사 내용	- 000 선생님 000 님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00 님은 지금 000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좋은 점은 뭐예요? - 혹시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 좋은 점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인사 나눔과 첫 대면 시 모습) - 조사원이 자기소개 후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악수에 응함. - 상담실 공간과 조사원들이 낯설고 불편했는지 상담실 밖으로 곧장 나감. - 거실 한 켠 싱크대에 놓여있는 컵을 들어서 조사원에게 보여줌. 상담원이 "목이 마르세요? 물을 드릴까요?" 라고 물으니 답하지 않고, 컵을 싱크대 수도꼭지에 가져가 물을 틀어달라는 표현을 함. - 마실 수 있는 물은 여기에 없다고 설명하고, 다시 상담실로 들어가 대화하기를 요청함. - 컵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기를 요청했으나,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상담실에 함께 들어옴. - 상담실에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몇 가지 활동 후 다시 거실로 나옴.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신문지를 찢는 활동을 다시 함. (생활지도원 000 인터뷰) - 00님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으니, 같은 방을 쓰는 이용인들과 마찰이 없다고 함. -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기 등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니 다른 이용인들과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것 같다고 함.

□ 장애인 당사자가 좋아하는 활동/교육/취미/직업/사람

문	항	조사기록
음식	- 오늘 아침(점심)에 뭐 먹었어요? - 식당에 어떤 게 나오면 맛있어요? - 배달시켜 먹는 음식은 있어요? - 생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 시설 밖에서 가본 식당 중에 맛있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사진그림도구-스티커 붙이기 활동) - 음식, 활동, 동물 등 다양한 사진그림 중 음식사진에 관심을 가짐. 스티커를 주고 좋아하는 음식에 붙여달라고 요청하자, 족발에 스티커를 붙임. - 치킨에 스티커를 붙이려 했으나 스티커 뒷면(접착면이 아닌 부분)으로 붙이니 스티커가 종이에 붙지 않음. 상담원이 스티커를 뒤집어서 붙여야 잘 붙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다시 붙여보기를 요청함. 여러번 시도 후 붙이기에 성공함. - 그림과 사진들을 설명했으나, 오래 응시하여 보는 것이 어려워 보였음. (생활지도원 000 인터뷰) - 햄버거, 피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함. 프로그램 진행 시간식으로 먹은 적이 있는데 좋아했다고 함. - 식사나 간식 시간에 음식을 먹다가 물 종류 등이 있으면 달려간다고 함. 음식을 좋아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하다고 함. - 튀김류를 좋아하는데 특히 돈까스를 좋아함. 초딩입맛이라고 함. 식사 시 혼자먹기를 선호하고, 지원자가 떼먹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고 함. - 밥이 남아있어도 밥을 더 달라고 생활재활교사에게 본인의 손가락을 건넸다고 함. - 식사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의 음식을 탐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으로 집어서 가져간다고 함.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일 경우 행동)

문항		조사기록
낮활동 취미 교육 직업	- 좋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 재미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로 지금은 못하지만 혹시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그림그리기, 티비보기, 노래부르기 듣기, 야구, 축구, 수영, 놀이동산 가기, 여행가기) - 직업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은? - 용돈으로 주로 사는 물건은? - 좋아하는 물건은? ※ 좋아하는 활동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하는지도 질문해주세요	- 문항의 답변 기록

□ 장애인 당사자가 좋아하는 활동/교육/취미/직업/사람

문항		조사기록
관계 사람	〈질문〉 -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 좋아하는 같은 방 친구나 다른 방 사람은요? - 000 님이 왜 좋아요? - 혹시 다투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 그 사람과 다투거나 불편한 이유는요? - 어떤 때 다툼(불편한 일)이 일어나나요?	- 문항의 답변 기록
의사 표현	- 좋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 싫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 문항의 답변 기록

□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

문항		조사기록
두려운 것	- 무서운 것이 있나요? - 싫은 것이 있나요? - 언제 불안한가요? - 무서울 때(싫을, 불안) 어떻게 하나요?	- 문항의 답변 기록
화가날때	- 어떤 때 화가 나나요? - 화가 나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 문항의 답변 기록

문 항		조사기록
	- 주로 누구랑 있을 때 화가 나나요? -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나요? -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건강 안전	- 혹시 아픈 적이 있었나요? - 약은 언제 언제 먹나요? - 어떤 약을 먹나요? - 평소에 안전에 관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 문항의 답변 기록
기타 주의사항	- 신변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음식과 음료를 먹을 때 주의 사항은?	- 문항의 답변 기록

□ 자립욕구 - 주거형태

문 항		조사기록
어떤 집에서 누구와 살고 싶나요?	<기초조사지에 자립한다고 응답한 경우> -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그런가요? -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 그럼 혼자 살고 싶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나요? - 같이 살더라도 방은 따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나의 집이 생긴다면 어떤 것 같아요? - 나의 방을 한번 꾸며본다면 어떻게 꾸미고 싶어요? - 어떤 물건을 가장 사고 싶어요?	- 문항의 답변 기록
	<기초조사지에 자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 시설에 계속 있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잠깐 나갔다가 오는 건 어때요? - 일주일 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면 나가서 살아보는 것 괜찮나요? - 시설 밖에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 문항의 답변 기록
지역사회	<질문> - 000 님이 살고 싶은 동네는 어떤곳일까요? 질문을 통해 당사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 질문 내용을 정리한 것을 당사자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문항의 답변 기록

서식5 자립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조사원 작성)

자립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자(작성일)	()
성명		성별	
나이(생년월일)	만 세 (yyyy . mm . dd)	장애명·정도	
		의사소통수단	☐ 음성 ☐ 수어 ☐ 필담 ☐ AAC(보완대체소통) ☐ 몸짓 ☐ 기타()
거주유형	☐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학대피해쉼터 ☐ 재가장애인 ☐ 기타 ()		

항목	조사 내용 (작성예시)
당사자의 좋은점을 작성해주세요	- 웃을 때 반달눈이 매력적임, 밝고 긍정적임 - 모든 사람에게 친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잘 챙겨줌 - 책임감이 강함, 다른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즐김 -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알고 있음 -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함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을 작성해주세요	- 좋아하는 사람: 000(함께살고 있는 동료), 000 선생님 -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 000선생님을 도와주는 일, 000님과 시간을 보내고 도와주는 일, 스포츠 관람(축구 구가대표 경기, 야구, 농구) 수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행기 타고 여행가기, - 좋아하는 물건: 엠피쓰리, 이어폰, 다이소에 구입한 작은 물건
당사자의 자립 또는 자립서비스를 이해하거나 관심이 있나요?	다른 장애인분의 동영상상을 보며 '나도 제 집을 갖고 싶어요, 맛있겠다, 노래방 좋아해요' 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당사자의 자립욕구는 ?	000님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먹는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여행도 가고 싶어하는데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분의 동영상상을 보며 '나도 제 집을 갖고 싶어요, 맛있겠다, 노래방 좋아해요' 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회경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항목	조사 내용 (작성예시)
당사자의 건강상태	*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최근 건강검진결과, 진료 관련 내용 등)를 참고하여 기술 - 진료내용, 진료주기, 복용약, 복용주기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었을까요	- 000님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가 납니다. 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사전에 설명해주시고 동의를 구해주세요 - 시끄러운 환경을 싫어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말하거나 동일한 말을 계속하는 동료와 함께 있으면 힘들어 합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돈을 계산할 때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드로 물건을 살수 있으나 현금으로 물건 값을 계산할 때 지원이 필요합니다. 돈의 개념에 대해 이해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지원방향 (시설담당자 또는 보호자와의 조사 기록 반영)	- 다양한 체험이 필요하고 자립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당사자의 표현에 자립생활의 의사가 있다가 판단됩니다 ☐ 자립욕구나 자립서비스에 관한 욕구(관심도)가 높고 의사(의사표현)가 명확하여 자립을 우선 지원 ☐ 자립의사 또는 자립서비스 관심은 있으나 일정기간의 단기체험을 거친 후 자립 지원 필요 ☐ 자립의사 또는 자립서비스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지역사회 활동 및 단기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 지원 후 재상담 필요 ☐ 시설 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자립 의사가 없음
첨부서류	1. 자립 기초조사지 2. 자립 심층조사지 3.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포함

서식6 사례 회의록

사례 회의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지원단계	☐ 서비스 조사 ☐ 사정 ☐ 단기체험 ☐ 개인별지원 계획 ☐ 지역전환 결정/변경 ☐ 서비스 모니터링/재평가 ☐ 기타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총 명
회의내용	[대상사례 개요] - (가족사항) 조손가정 • ○○○(조부, 86세) 뇌경색으로 정기적 치료 • △△△(조모, 83세) 인공관절 수술환자로 거동이 불편, 관절염약복용 중 • □□□(손자, 21세, 남,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구등급 지적1급) 23년 2월 000특수학교 졸업 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로 000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하고 있음 - ○○○은 경제적 문제, 조모의 건강상태 등으로 000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 - □□□은 할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높고 본인이 돈을 벌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함 [주요 욕구와 문제] - 손자000의 자립: 건강상의 문제 등을 호소하며 손자 000의 자립(돌봄)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음. - 자립능력향상: □□□은 자립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전무하고 독립생활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음 - 일자리: □□□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함. - 자산관리: △△△은 손자의 장애로 인해 조부와 조모의 지원이 어려울 시 안정된 자산관리 등을 맡기고 싶어함.
회의결과	[개입방안] - 자립목표 단기체험 지원: 단기체험 통해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준비 지원 -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직활동 등 지원 - 자산관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및 후견인 연계 고려
향후계획	- 대상자 상담 추가진행 및 체험지원과정 안내 자료 제공 - 구체적 체험지원 과정 계획 수립

서식7 초상권 사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시 촬영된 대상자 사진 및 영상과 관련하여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사용 목적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홍보매체 및 인쇄물(브로셔,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물 등), 언론 매체(신문, 잡지 기사 등) 등 사업 홍보

■ 사용 형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참여 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위의 사항에 따라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귀 기관에 위임합니다.

초상권 주체 성명	성 명
예) 홍길동 (본인)	(서명 또는 인)

※ 사진 및 영상물 활용 대상자에 한해 동의 필요

※ 본인(대리인) 동의에 의한 경우만 사용

년 월 일

000 지자체 / 수행기관장 귀하

서식8 단기체험 신청서

단기체험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이 름	장애인과 관계 []법정대리인 []보호자 []기타()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	신청자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장애유형	(중복장애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구, 급)
	사용 보조기기	☐ 유 ☐ 무 (보조기기:)		소득수준	☐ 기초수급 ☐ 차상위 ☐ 일반
	연고자	☐ 유 ☐ 무 (관계:)		주요특성	(개인별 주요 특성-주거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일자리, 지역사회 활동 등 간략)
거주지 정보	시설명	부서		담당자	
	주 소			연락처	Tel : Fax :

위와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단기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포함 2. 자립 기초조사, 심층조사의 조사지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	--

서식9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성명		유형	
장애정도		시설보호기간 (원가정 거주기간)	
장애인의 주요 욕구		자립체험 주요 내용	
필요조치	☐ 도전적행동 ☐ 기저질환 ☐ 기타()		
구분	개별 자립 체험 지원 계획 및 내용		
개인별 단기 체험 지원 계획 목표 및 지원방향			
지역 자원 및 인적자원 (서비스포함) 연계계획	주거자원		
	활용 인적자원		
	의료연계서비스		
	지역자원 활용		
	추가		
	추가		
개인별 단기체험 예산수립	* 000님 단기체험 개별 예산 수립 (총 300,000원) 1. 식비 및 다과비 10,000원 * 15식 = 150,000원 2. 지역사회 활동 체험비 30,000원*4회= 120,000원 3. 자립 지원 관련 교육 및 선배동료 주택 방문 등 15,000원*2회 = 30,000원 * 기타 : 세면도구 및 기타 물품 구입 : 개별 자부담		
기대효과	1. 2. 3.		

상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며,
계획된 단기체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약속합니다.

20 . . .

신청인(대리신청인) : (인)

담 당 자 : (인)

수 행 기 관 : (인)

수행/제공기관명 귀중

서식10 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 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예시

시간	날짜/요일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8:00~09:00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09:00~10:00	수행기관명 → 00의집 (기관차량)	주택 → 순천만 (기관차량)	숙소 → 주민센터 (도보)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외출 준비 및 만족도 조사
10:00~11:00		순천만여행하기 (점심식사 공방 체험 카페)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받기	상담 및 개별 자립교육 (체험주택)	자립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체험주택)	숙소 → 자립주택 (기관차량)
11:00~12:00						자립주택 (주택 둘러보기, 이야기 나누기)
12:00~13:00	점심 식사 (00의 집 근처)		지역사회 내 식당 및 카페 이용하기	점심 식사 (배달음식)	장보기 (주택 근처)	00의집 복귀 및 점심 식사 (기관 차량)
13:00~14:00	협약서 작성 (00의집)			집안일 해보기 (체험주택)	요리활동	
14:00~15:00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미용실 이용	체험주택 → 000동 (대중교통)	체험주택 → 00IL센터 (대중교통)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15:00~16:00						
16:00~17:00	00의집 → 수행기관 (기관차량)	순천만 → 마트 (기관 차량)		자립선배(000님) 만나기 (카페가기, 이야기 나누기, 저녁식사)	자조모임 참여하기	
17:00~18:00	주택입주 (체험주택)	장보기 (주택 근처)	주택입주 (체험주택)			
18:00~19:00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요리활동 (말키트)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000동 → 체험주택 (대중교통)	00IL센터 → 체험주택 (대중교통)	
19:00~20:00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21:00~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낮활동	000,000지원 / 00활동지원사 (20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야간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11 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 설문방법 : 사전설문은 체험 초기상담 시 작성, 사후설문은 체험 과정 종료 후 총 2회 실시
- 설문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 설문내용 : 자립에 대한 이해, 활동 경험, 행복, 체험만족도

1. 자립에 대한 이해

내용	(0점)모른다↔ 잘 안다(3점)			
1. 누구나 자립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0	1	2	3
2. 다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나와 함께 살 사람, 내가 살 곳, 나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사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식, 대인관계,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방식	0	1	2	3
3. 나는 자립에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주택, 자립정착금 등)를 알고 있다.	0	1	2	3

2. 활동 경험

내용	경험 있음	경험 있음
1. (식사) 식사준비, 식품구입과 준비, 식료품관리, 요리 등		
2. (의류) 적절한 의류 선택, 의류관리, 내가 입을 옷을 직접 선택하거나 구매		
3. (청소/세탁)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4. (사회참여) 지역사회 내 활동(동호회, 모임, 음악회, 공공기관 프로그램), 공공시설 이용 등 예. 모임이나 단체 가입 및 활동		
5. (이동방법 선택 및 이용) 길 찾기,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보 등의 선택 및 이용		
6. (활동보조) 가사 지원, 일상생활, 사회활동(외출동행) 등		
7. (지원제도) 지원 이용방법, 공공부조 등 복지관련 지원금, 행정, 공공기관 이용 등		
8. (상담/교육) 개별상담, 자립생활관련 교육, 직업교육 등		
9. (금전관리) 돈의 직접 지출, 가계부작성, 금전계산, 구매 등		
10. (관계 맺기)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 이해, 지역사회(이웃, 자원자, 복지 자원)에서 우정관계 맺기 등		

3. 삶의 만족

3-1.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내용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5점)				
1. 나의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2. 나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3. 나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만족한다.	1	2	3	4	5
5. 나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나의 사회적 친분관계(친구 및 이웃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7. 나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나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단기체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단기체험 주택(공간)	0	1	2	3	4
2. 단기체험 시기(기간)	0	1	2	3	4
3. 단기체험 지원 전담인력	0	1	2	3	4
4. 단기체험 프로그램	0	1	2	3	4
5. 활동지원서비스	0	1	2	3	4
6. 추가가능					

서식12 단기체험 설문지(보호자용)

- 설문시기 : 단기체험 과정 종료 후
- 설문방법 : 1) 시설 종사자 또는 보호자(가족 등)에게 단기체험 과정에 참여한 장애인의 체험 과정 결과 안내 2)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및 인터뷰
- 설문내용 : 단기체험 과정, 단기체험 참여 장애인의 변화 등

1. 단기체험 과정

내용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단기체험은 장애인 자립에 도움이 된다	0	1	2	3	4
2. 단기체험은 시설 종사자 등 보호자(가족 등)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발달장애인 자립 등)	0	1	2	3	4
3. 단기체험 과정은 자립준비 등에 필요하다	0	1	2	3	4
4. 단기체험 후 장애인의 행동 및 변화가 있다	0	1	2	3	4
5. 단기체험 과정을 다른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족 등)에게 추천하겠다.					

2. 인터뷰(체험 전·후 비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체험 개선점 등)

- 단기체험에 참여한 장애인 생활의 변화(구체적)
- 체험 지원 과정의 개선사항
-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 * 추가가능

서식13 단기체험 결과보고서

1. 단기체험 개요

구 분	진행 개요
참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시설 또는 재가 등의 구분
진행기간	04/24(월) ~ 04/27(목)
진행장소	000 전역, 000 일대
소요예산	금 000,000원
담당자	000 전담인력, 000전담인력

2. 지원인력 및 협력기관 운영계획

협력기관	성명	직책	활동시간	지원내용	비고
00수행기관 전담인력					
외부기관명1					
외부기관명2					

3. 진행 일정

내용		기간	0월 0주	0월 0주	0월 0주	0월 0주	0월 0주
단기체험 기획	체험자 상담, 시설 및 기관 협의 등		●	●			
단기체험 계획 수립	개인별 단기체험 계획수립 및 서비스 동의						
단기체험 진행	자립교육 및 선호하는 활동 등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립조사 및 만족도 평가 등 결과보고서 작성					●	●

4. 단기체험 일정

시간	날짜/요일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8:00~09:00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09:00~10:00		주택 → 순천만 (기관차량)	숙소 → 주민센터 (도보)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외출 준비 및 만족도 조사
10:00~11:00	수행기관명 → 00의집 (기관차량)	순천만여행하기 (점심식사 공방 체험 카페)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받기	상담 및 개별 자립교육 (체험주택)	자립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체험주택)	숙소 → 자립주택 (기관차량)
11:00~12:00						자립주택 (주택 둘러보기, 이야기 나누기)
12:00~13:00	점심 식사 (00의 집 근처)		점심 식사 (배달음식)	장보기 (주택 근처)	00의집 복귀 및 점심 식사 (기관 차량)	
13:00~14:00	협약서 작성 (00의집)		집안일 해보기 (체험주택)	요리활동		
14:00~15:00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지역사회 내 식당 및 카페 이용하기	체험주택 → 000동 (대중교통)	체험주택 → 00IL센터 (대중교통)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15:00~16:00						
16:00~17:00	00의집 → 수행기관 (기관차량)	순천만 → 마트 (기관 차량)	미용실 이용	자립선배(000님) 만나기 (카페가기, 이야기 나누기, 저녁식사)	자조모임 참여하기	
17:00~18:00	주택입주 (체험주택)	장보기 (주택 근처)				
18:00~19:00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요리활동 (밀키트)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000동 → 체험주택 (대중교통)	00IL센터 → 체험주택 (대중교통)	
19:00~20:00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21:00~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낮활동	000,000지원 / 00활동지원사 (20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야간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5. 진행 내용 및 결과

일 정	내용		
	진행 내용	참여자의 긍정	참여자의 어려움 등
00/00 (요일)	- 협약서 작성 - 자립조사(사전) - 사례회의 진행 - 전동휠체어 연습 - 저녁식사(김치찌개) - 일일 만족도조사 - 가계부 작성		
1일차 활동 사진			
00/00 (요일)	00공원 산책 점심식사(닭갈비) 뜨개질 공방체험 마트 장보기 저녁식사 (초밥) 일일 만족도 조사 가계부 작성		
2일차 활동 사진			
00/00 (요일)	- 요리활동(새우 감바스) - 집안일 해보기 (세탁기, 설거지 등) - 대중교통이용 (지하철, 저상버스) - 자립선배 만나기 - 일일 만족도 조사 - 가계부 작성하기		
3일차 활동			

일 정	내용		
	진행 내용	참여자의 긍정	참여자의 어려움 등
사진			
00/00 (요일)	- 신속항원검사 받기 - 점심식사 - 가계부 작성하기 - 일일 만족도 조사 - 단기체험 소감		
4일차 활동 사진			

6. 사업평가

1) 성과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평가도구	평가방법	계획	결과	달성율
1. 단기체험을 통하여 자립과 지역사회 삶을 이해한다.						
2. 자립 후의 삶의 모습을 당사자가 직접 그려보며 자립을 준비한다.						
3. 당사자 보호자가 당사자의 자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만족도 및 주요변화

00님에게 중요한 것 (주관적 선호)	00님을 위해 필요한 것 (객관적 필요)
1. 혼자 보내는 시간 2. 재활치료(걷기운동) 3. 뜨개질 4. 재택근무 5.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	1. 00님의 일상 속 새로운 도전 (대중교통 이용, 집안일 함께하기 등)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2. 00님에게 완벽한 일주일을 위한 주간 활동 (뜨개질 공방, 소규모 활동 등) 탐색 및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사전·사후 설문 내용 참고하여 작성(보호자 및 종사자는 사후 변화 기록)

사전 참여자/보호자/종사자 인터뷰	- 사전사후 자립 긍정도 등의 인식변화 (자립의 이해, 심리적 변화, 인식변화 등)
사후 참여자/보호자/종사자 인터뷰	
반영사항 및 향후 계획 (담당자 소견)	

7. 결산

항목 및 결산내역	예산	결산	증감	비고
- 체험활동비 50,000원x4일				
- 회의진행비 0,000원x7명x1회				
- 활동지원인력 (0/00~0/00) 16,150원×1명×33시간				
총계				

서식1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인적사항	이 름	장애인과 관계 []법정대리인 []보호자 []기타()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본인) 인적사항	이 름	생년월일	성별 []남성 []여성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장애유형	(중복장애 :)	장애정도 []심한 []심하지 않은 (구등급: 급)
	보호자 (연고자)	(연락처:)	소득수준 []수급자 []차상위 []기타
	입소시설 (해당자만)	(연락처:)	사실거주기간 (해당자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대상자 선정 및 자립을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서상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등의 상황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 하였고, 신청서 작성 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보호자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2. 보호자가 성년후견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 증명서 3. (발달장애인의 경우)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확인 동의서

보호자가 성년인 후견인, 성년인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 참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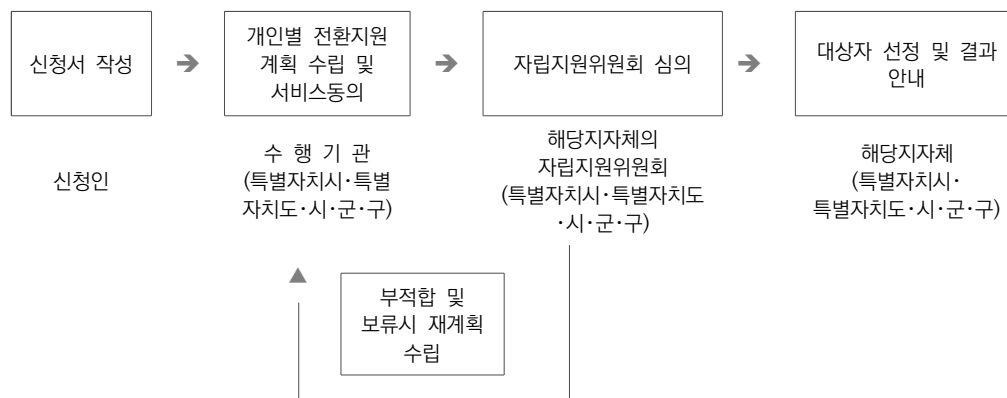
유의사항

담당공무원은 자립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보호자 신청시 보호자 확인서류
3.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4. 자립조사 결과 요약서 1부(수행기관 제출)
5. 신청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 자립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처리절차



서식1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장애인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장애인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장애인 (본인) 인적사항	이 름	생년월일	성별 [] 남성 [] 여성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중복장애 :)	장애정도	[] 심한 [] 심하지 않은 (구등급: 급)
	보호자 (연고자)	(연락처:)	소득수준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입소시설	(연락처:)	시설거주기간

확인자 인적사항	이 름	소속 및 직위	장애인과 의 관계 [] 공무원, [] 사회복지사, [] 기타()
	이 름	소속 및 직위	장애인과 의 관계 [] 공무원, [] 사회복지사, [] 기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대상자 선정 및 자립 신청을 위해 신청인 본인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상자 신청서 작성에 정서적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향 확인자1 (서명 또는 인)

의향 확인자2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최소 2인 이상의 전문가 등이 장애인 당사자 의사 파악 필요
- 구비서류 : 심층조사지,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자립 신청에 대한 의향 확인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6 개인별전환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개인별전환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I. 대상자 기본 정보				
대상자 (장애인)	성명 홍길동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만 세)	
	장애유형 지적 심한장애			장애 정도(구 2 급)
	거주유형			연락처(집/휴대전화)
	주민등록주소지 000도 000군 000읍 00번지			000-000-0000
조사원	소속 및 직책 00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성명 박00	조사일시 및 장소 2024.0.0.14:00 00의 집 조사실	자립의사 및 조사 주요 내용 자립의사 명확, 자립육구 강화, 당뇨로 인한 건강관리 및 삶의 목표는 취업
	소속 및 직책 00수행기관 전담인력	성명 김00	조사일시 및 장소 2024.0.0.14:00 00의 집 조사실	자립의사 및 조사 주요 내용 자립의사가 명확하고 육구가 강하며 주거 독립을(본인만의 공간)원함. 바다낚시를 하고 싶어함
작성자	소속 및 직책 00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성명 박00	작성일시 2024.0.0. 10:00	전환계획의 주요 내용 00아파트 입주가능, 당뇨로인한 00병원 연계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및 일자리연계23.7월전까지 연계하여 전환예정
II.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대상자육구 (조사결과)	대상자의 자립의지 및 욕구			
	☒ 매우강함 ☐ 강함 ☐ 잘모름* ☐ 약함 ☐ 매우약함 * ☐ 기타()			
	대상자의 자립의사표현			
	☒ 매우명확 ☐ 명확 ☐ []번복/무응답* ☐ 불분명 ☐ 매우불분명 * ☐ 기타()			
	선호 서비스 우선순위(번호기입 - 3순위까지)			
	☐ ① 나의집/공간 ☐ ② 시설박생활 ☐ 여가·문화 ☐ ③ 일자리/취업 ☐ 사회적관계 ☐ 일상생활 ☐ 자립체험 ☐ 의사소통 지원 ☐ 질환경리 ☐ 행동 및 심리지원 ☐ 기타 ()			

대상자의 상황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 00님은 만 00세로 45세부터 당뇨진단을 받고 당뇨약을 복용중임. 그 외 건강상태는 맹 양호하며 별도의 보조기기 및 건강 관련 지원은 없음.					
	대상자 연고자(부모) 등 자립의사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주요조사결과	- 부모님은 안계시고 언니가 있으나 언니는 년 2회 명절 때 유선상 간헐적 연락을 하고 있음. 자립지원 결정 시 언니와의 조사로 자립서비스를 안내하고 반대할 경우 주택 열람 및 타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임					
	- 기초, 심층 조사의 주요 결과를 작성(당사자의 강점 및 주된 욕구와 선호도 중심)					
서비스 지원유형	[■] 자립지원형 [] 집중지원형					
	결정사유 및 지원 내용 스스로 의식주 관련 개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자기 의사표현 및 능력이 원활함. 자립 시 일을 하고 싶고 혼자만의 주택과 공간을 원함에 따라 자립지원형으로 선정하였음					
대상자 서비스 지원 계획	합의된 욕구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서비스 영역	서비스 세부내용	평가 방법
	- 사무직 근로 취업으로 만족감과 안정적인 소득 활동하기	- 컴퓨터 타법 속도 높이기, 엑셀함수 5가지 이상 익히기 - 일자리 연계정보 획득 및 취업 과정 익히기	- 000주민센터 장애인일자리 등 사무직 일자리 취업	직업(일자리)	- 컴퓨터 (한글, 엑셀, 워드) 학습 지원 (학원 등록 등) - 일자리 면접 및 정보 지원	▶ 정량평가 - 타법속도, 엑셀 및 워드 활용 정도 사전·사후 점검 - 일자리 취업활동 건수 - 취업여부 ▶ 정성평가 - 서비스 만족도 - 근로 만족도

주거전환 지원계획	[]아파트 [■]빌라 []주택 []기타 ()		
	지원 내용 (퇴소 인수인계, 이사지원, 입주 지원 등을 일정(예정일)별로 기재 자립지원위원회 대상자 결정 후 시설 및 보호자 안내, '23. 0월 중 퇴소 절차 진행 예정, 00동 00빌라 입주 예정, 000님의 선호도에 맞는 가구 배치 및 소방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계획 예정		
담당자소견	- 000님은 00의 집에서 약 00간 장기거주하였음. - 자립조사 결과 다양한 경험과 관심있는 분야가 다양한 반면에 시설의 생활을 지루해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공간과 직업 등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함 - 00세부터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은 정기적인 복용으로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나 저염과 저당도식의 식단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언니와의 간헐적 교류는 당사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거주시설과 언니와의 조사를 추진하여 자립서비스 안내 및 동의를 구할 예정임 - 00님은 자립의사가 명확하고 삶의 목표가 뚜렷한 당사자로서 자립지원형으로 선정하여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수립일	2024.0.0.		
소속	직급(직위)00수행기관 전담인력	성명 김00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며, 계획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약속합니다. 20 . . . 신청인(대리인) : _____(인) 담당자 : _____(인) 수행기관 : _____(인) 수행/제공기관명 귀중			

서식18 자립대상자 결정(선정, 변경, 종료) 안내서

(앞쪽)			
자립대상자 결정(선정, 변경, 종료) 안내서			
심의회 후 7일			
대 상 자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장애유형 및 정도(구, 급)
	주소		연락처(본인이 없을 경우 시설담당자)
수행기관	기관명	담당자(소속/직책/업무)	
	주소	연락처	
거주시설	시설 유형(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재가장애인 등)		
	시설(기관)명	담당자(소속/직책/업무)	
	주소	연락처	
결정(변경) 일자		조치 일자	
위와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대상자로 결정(선정, 변경, 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장애인·보호자·수행기관·시설 귀하			

서식19 자립대상자 사전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목록표

자립대상자 사전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목록표

성명		생년월일		퇴소일 (주택입주일)	
구분	연계자원	지원 세부내용	준비진행사항(구체적기록)	시행일정	완료 여부
지원기관					
주거					
지원인력					
사회보장 급여					
사회 서비스					
의료지원					
직업					
제공기관					
권익지원					
주말· 휴일지원					
추가자원1					
추가자원2					

대상자			000(남)		생년월일		1900.00.00.(만 00세)		
장애특성			심한장애 (구 지적장애 3급)		거주시설		00재활원 21년 거주 (00시 00구 000동)		
일상생활 영역				건강의료			식사균형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2022 4.1 ~ 현재	활동지원등급 12구간 (가형) 150시간	병원진료 (고혈압, 하지정맥, 허리디스크, 기관지염, 위염)	22. 4.1 ~ 현재	월 1회 병원 진료 진행 중	활동지원 사 지원 (1일 3식)	2022 04.01 ~ 현재	활동지원사를 통한 식사 지원 중/스스로 조리가능
	시비	2022 5.1 ~ 현재	자립 후 3년간 40시간 지원	수면 위장 내시경 진료	22. 09.06.	조식검사완료/역 류성식도염/위장 약복용중	-	-	-
	시범	2023.1.	자립지원형 40시간	건강검진 장애인 치과 진료	'23 중 11.28	건강검진예정 틀니사용	-	-	-
주된 욕구 및 강점						당사자 요청사항			
- 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고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희망함. - 정기적인 은행 방문,금전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음. - 다양한 문화생활(특히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음. - 활동지원사 및 전담인력에게 수시로 전화통화를 시도함.						- 주택 내 자신의 방에 케이블TV 설치 - 국내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			
주택 관리				낮활동 및 사회생활			야간지원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응급 알림		2022. 04.20	5월 설치 완료	00000센터	2022.04.01. ~ 현재	프로그램 부분 참여	응급 알림	2022. 04.20	5월 설치 완료
소방 안전 시설		2022. 3월	2022.03.31. 입주 전 재난대피물품 구매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산책 등)	2022.04.01. ~ 현재	국내여행	IOT앱 사용	22.9	전담인력 확인용
편의 시설		2022. 3월	현관 로비 층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슬라이딩 도어						
재산관리서비스							공공후견인		
연금-재산관리		자립이후 즉시	재정상황표 구조화서식으로 전담인력이 관리(월2회)				수행기관측에서 지원중		

서식21 서비스 의뢰 요청서

서비스 의뢰 요청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의뢰기관	기관명		연계수단	☐ 공문() ☐ 유선() ☐ 이메일() ☐ 방문() ☐ 기타()
	담당자		(직위/업무)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연계 접수기관	기관명		주요사업	
	담당자		(직위/업무)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의뢰 내용	대상자명		성별	
	장애특성 (유형/정도)		생년월일	
	주요사유		연락처	
세부내용	내용(서비스 의뢰, 협력사항 등)			
※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년 월 일 ○○○ 기관장 귀하				

서식22 자립대상자 개인별지원 일지

자립대상자 개인별지원 일지 / 예시

결 재	담당	팀장	부장

서비스이용자	홍길동	생년월일	99.99.99	담당자 (전담인력)	김한국
관리주기	매일	관리주기 변동사항	22.12~23.5 매일 → 23.6월~23.9 주간(일자리 참여) →23.10월 매일(퇴사)		

연번	일자	시간	사유	주요활동내용	향후 계획
1	2022-12-06	오전 10시	정기	이사지원	이사 등 가구배치와 새로운 환경 적응훈련 실시
2	2022-12-06	오후 9시	정기	취침지원	환경적응을 위해 함께 취침
3	2022-12-07	오전 12시	정기	식사확인	활동지원사 식사지원 식사의 질 등 확인
4	2022-12-07	오후 9시	정기	취침지원	함께 취침
5	2022-12-08	오전9시~ 오후18시	수시	현장체험	장애인복지관 현장 프로그램 참석(단풍놀이)
6					

서식23 자립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자립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대상자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장애유형 및 정도		지역 전환일자	
	수행기관			
	주택주소			
모니터링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담당자 및 연락처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모니터링 주요 내용		심리적	- 활동지원사와의 마찰 발생으로 변경 요청 있음. 재상담 추진 예정	
		신체적	- 당뇨로 인해 000병원 0월 0일, 00시 정기진료 예약사항 안내, 일 2회 당뇨약 복용 잘하고 있음	
		서비스	- 장애인일자리000복지관 근무 상황 확인 시 동료들과 관계 원만하고 일자리 만족도도 높음	
		주택	- 보일러 고장, 미온수가 나오질 않아 빠른 수리 요청	
		기타	- 활동지원사와의 추가상담 및 제공기관 의견 전달 예정	
모니터링 상담 및 조치사항		000 님은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와 정기적 병원진료(당뇨) 등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있으나 2개월 전에 매칭된 활동지원사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여 추가 상담 및 모니터링 필요함. 더불어 주택 내 보일러가 고장 나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아 수리 의뢰가 필요하여 조치할 예정임		
향후계획 (추가상담, 서비스 변경계획 여부, 서비스 추가 연계 예정 등)		- 1주일 내(~2024.0.00까지) 보일러 수리 요청 예정 - 정기적 병원 진료 동행 예정(000병원 0월 0일, 00시, 관내차량 지원 예정) - 활동지원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상담 예정		

서식24 자립대상자 삶의 질 만족도 조사지

- 거주시설에서의 삶의 질 또는 재가장애인(입소대기자 등)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 직전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건강 - 요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나요? -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지원을 받으면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한가요?					
○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 음식, 의복, 여가활동, 물건구입, 주간활동 등을 스스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나요?					
○ 가족관계 - 현재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시나요? 만나는 횟수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친구들과의 관계 - 주변사람과 잘 지내시나요? -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하나요?					
○ 외부활동(밖에 나가기, 외출하기) -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습니까?					
○ 내가 하루 동안 하는 일 -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 않은지, 본인에게 맞는지, 낮 동안의 활동에 만족하나요?					
○ 음식 - 평소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나요? 만족스럽습니까?					
○ 행복 - 요즘 기분이 좋거나 즐겁습니까? -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습니까?					
○ 편안함 -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것은 있나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까?					
○ 안전 - 화재나 사고가 생길 경우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내에 대한 존중/대우 -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 건강관리 -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 등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사생활 -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공간도 있습니까?					
○ 전반적인 삶의 질 - 내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Center for Outcome Analysis에서 개발된 거주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 도구 Personal Life Quality Protocol(COA-PLQ), 박숙경 2021의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질 변화 중단 연구」 참고

서식25 자립대상자 안전 및 주택 안전관리 등 점검표

자립대상자 안전 및 주택 안전관리 등 점검표 (지원자용)

□ 주택 개요

주택주소	000주공 3단지 000동 000호	담당자 (연락처)	000
서비스이용자		지원자	000의 지원자(활동지원사) 000 000의 지원자(활동지원사) 000
자립지원 담당자		점검자	(인)
		점검일시	0000. 00. 00. (요일) 시간

□ 점검항목

구분	항목	점검결과	비고
건강 상태 모니 터링	1 매일 대상자와 지원자 등의 상시적인 개인별 소독 및 열, 기침 등의 증상 확인 * 체온계등 활용	☐ 양호 ☐ 불량	
	2 외출 시 마스크 착용(대중교통, 병원 등)	☐ 양호 ☐ 불량	
	3 건강 모니터링(당뇨-혈당체크, 혈압- 혈압약 복용 등, 정기약복용- 약복용일지 등) 확인	☐ 양호 ☐ 불량	
	4 신체적·심리적 변화 확인(복통 및 식사에 따른 불쾌감, 어지럼증, 날씨에 따른 우울감 등)	☐ 양호 ☐ 불량	
개인 위생	5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손 소독제 비치	☐ 양호 ☐ 불량	
	6 개인위생, 기침예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예방 수칙 게시 및 교육 실시	☐ 양호 ☐ 불량	
	7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적극적으로 사용	☐ 양호 ☐ 불량	

구분	항목	점검결과	비고
환기 · 소독	8 공용공간(거실), 개인공간, 화장실 등 정기적인 환기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주1회)	☐ 양호 ☐ 불량	
	9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손잡이, 스위치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	☐ 양호 ☐ 불량	
가스 점검 · 화재 예방	10 가스차단기 확인, 보일러실 확인, 전기장판 및 선풍기 등의 전원을 확인	☐ 양호 ☐ 불량	
	11 소화기(분말, 투척용), 단독경보형 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12 가스사용, 보일러 사용, 화재 시 대피와 신고 등의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	☐ 양호 ☐ 불량	
보일러 실배기 및 환기	13 보일러실 배기 상태 및 환기구 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14 충분한 환기 확인	☐ 양호 ☐ 불량	
기타	15 ※ 주택 주택 관리 및 특이사항 * 위급상황 대응훈련 시 기재(일정, 참여대상, 진행방법 등 간략기재, 대응훈련실시계획안 및 결과보고 별도 첨)		

서식26 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					
수행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고 대상자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자			사고시각	(오전 / 오후) 시 분	
사고유형 (중복체크)	☐ 화상 ☐ 베임/찢어짐 ☐ 금전사기 ☐ 찰과상 ☐ 호흡곤란/쇼크/질식 ☐ 도벽/손해배상 ☐ 염좌/골절/탈구 ☐ 물체에 끼임 ☐ 성추행 등 ☐ 낙상/추락/강타 ☐ 뇌경색/뇌출혈 등 ☐ 연락두절 ☐ 압박 ☐ 수술/입원 등 ☐ 기타()				
발견자(목격자)			조치사항		
보호자 연락	☐ 안함 ☐ 연락함 ☐ 해당없음 (※ 고지내용 기재)		연락시각	(오전 / 오후) 시 분	
소방서(경찰서) 등 신고	☐ 안함 ☐ 신고함 (오전 / 오후) 시 분				
사고 발생 장소	☐ 주택-거실 ☐ 주택-복도, 계단 ☐ 주택-화장실 ☐ 주택-부엌 ☐ 주택-커뮤니티실 ☐ 수행기관 ☐ 직장() ☐ 서비스이용장소() ☐ 기타()				
사고 당시 활동 내용	☐ 직장활동 ☐ 이동 ☐ 외출 등 ☐ 주택 내 활동(식사) 등 ☐ 연계기관 ☐ 기타()				
조치내용	(일시 및 장소, 조치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사고발생 건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는 위의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00수행기관장/시·군·구청장 (인)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시식27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점검영역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기준	확인내용	점검결과	
				자체	구·군
시설 기준	입지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등)으로 이용지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분 이내 또는 1km 미만에 있다.	현장관찰		
	안내표시	센터를 알리는 간판, 유도표시 등 외부표지가 있다.			
	사무공간	사무공간 및 조사실을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턱받이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조직 및 운영 실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개최	위원 구성 및 개최 여부	위원회 회의록, 명단, 증빙서류		
		위원에 해당 구·군 소속의 담당 공무원 포함 및 참석 여부			
	인력운영	제공인력 운영의 적정성 ※ 이용자 최대 4명당 1명의 제공인력 구성	업무분장표, 근무일지, 인사철 등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상태의 정도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 채용기준 명시화 및 공개채용 여부	채용서류철, 인사파일철, 근무대장 및 일지 등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여부			
		근로계약서, 인사철, 근무대장 등 비치여부			
	급여 및 수당 등 지급 적정성	겸직 중인 직원과의 급여 이중지급 여부	급여대장 등		
		수당 지급 (명절, 가족수당) 지급 여부			
		경력(호봉)에 맞는 급여 지급 여부			
	직원교육	관리자를 포함한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 실시 여부	관련 계획서 및 평가 서류 등		
		직원교육의 만족도 평가 실시 여부			

점검영역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기준	확인내용	점검결과	
				자체	구·군
예산 및 회계	수입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처리(수입결의서, 현금출납부)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절한가?	수입결의서 현금출납부, 통장		
	지출	계정 별도계리, 회계장부 별도 비치, 관리 여부	회계관련서류 (지출품의, 지출결의서, 영수증, 예·결산서, 통장내역 등 확인)		
		예산 편성 항목 적정성 여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2] 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목 편성 적정성 여부			
		목적사업과 무관한 지출 발생 여부 ※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수료, 경조사비 등			
		지출 서류 적정성 여부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산출기초조사서, 영수증 등 첨부 여부			
		회의 참석수당 지급 적정성 및 지급 시 계좌 이체, 회의참석자 인적사항, 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여부			
		강사 수당 등 원천징수 실시 및 적정성 여부			
		인건비 지원받는 직원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적립 및 적정 사용 여부			
		예산계확상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 비율대로 집행 여부			
		예산 전용 규정 준수 여부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 여부, 업무추진비 총당을 위해 다른 비목에서 전용 여부 등 확인			
		당초 보조금 편성비목 외 지출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 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 적립 여부 및 시설운영에 적정 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점검영역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기준	확인내용	점검결과	
				자체	구·군
사업 운영 정도	운영실적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노력 및 계획 대비 운영 실적 정도	사업 관련 문서 (계획서, 이용자 개인파일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지원 실적 정도			
		지역사회 내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정도			
	주택관리	주택 및 시설물 관리 상태 정도	시설물관리 대장 (비품관리 대장), 주택 안전관리 점검표 등		
		집기 및 편의시설 관리 정도			
	안전체계 관리	안전체계 및 관리 정도(안전관리자 지정, 비상 연락 및 대응체계 수립 등)			
		위급상황 등 대응훈련 시행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만족 정도	대상자 개개인별의 계획 수립 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이용자 참여방식 및 정도)	사업 관련 문서(계획서, 결과보고서, 대상자 개인파일 등)		
		서비스 만족도 점검 및 평가 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이용자 참여방식 및 정도)			
		관련 회의체 여부 및 운영 정도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사항 정도			
점 검 자 : 소속)					

※ 관련 서류 확인 후 작성 요망

서식28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24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0000시)

I. 점검개요

☐ 점검반 구성

○

☐ 점검 실시 일자

○

II.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결과

기관명	지적사항	지적사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비고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Ⅲ. 총평 및 건의사항

☐ 점검결과 총평

☐ 우수사례(1건 이상 필수)

☐ 건의사항

서식29 시범사업 현장모니터링 점검표

1. 모니터링 주요 지표

주요 지표		지표 설명
시범사업 지원체계 조성	지자체의 적극 행정 노력	- 자립지원 정책 시행 또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달체계(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등) 및 민관협력(자립지원위원회 등), 안전지원체계 등의 구축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 지역사회 내 시범사업 홍보 -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자립관련 정보제공
대상자 발굴	자립조사	- 자립희망자 발굴 및 자립신청과 상담과정 등의 경로 구축
개별전환 지원계획 및 전환(이주) 지원	개별전환계획	- 대상자 특성 및 선호 등을 반영한 개별전환계획 수립 및 선정된 장애인(대상자)과의 별도 상담내용 확인
	대상자 심의 및 선정	- 대상자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대상자 선정 적정성 등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보 등
	주택계약 및 입주(이주)지원	- 주택계약 및 입주(이주)지원 등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을 위한 준비
	퇴소절차	- 거주시설 퇴소절차 모니터링
	주거지원	- 대상자 특성 및 선호 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
개별자립 지원	지역 정착 상황	- 대상자 선호도, 필요도에 따른 개별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이용자 특성 반영한 상담진행 - 계획수립에 근거한 서비스 구성 및 지원 내용 - 대상자의 만족도(건강상태, 적응정도 등), 주택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는 점검 과정 -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서비스 재계획 수립 및 변경 신청 이력,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의견수렴	자립지원 정책 및 시범사업	- 시범사업 의견수렴
행정관리		- 수행기관 행정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여부 - 시범사업 관련 서류철 관리 및 보안체계 - 자산취득 관리 여부 - 예산집행 부진 시 향후 집행계획 마련

서식30 시범사업 평가조사표

구분	평가 조사 내용	배점	자체평가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평가(총점)		100 (+10)	
I. 자립지원 경로 및 환경조성	I-1. 안정적인 자립지원 경로 및 환경 조성 (소개)	40	
	I-1-1. 시범사업 이행계획 수립	4	
	I-1-2. 운영주체 모형별 수행기관 선정(지정)	4	
	I-1-3. 전담인력 채용 및 전문적 운영	4	
	I-1-4. 주거확보 및 적정한 관리	4	
	I-1-5. 자립서비스 조사 및 조사원 운영의 전문성	4	
	I-1-6. 자립희망자 및 대상자 발굴 노력의 적극성	4	
	I-1-7.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4	
	I-1-8. 자립지원서비스(자원) 발굴 및 안전등 지원의 적극성	4	
	I-1-9. 시범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노력(조사, 정보제공, 대상자교육)	4	
	I-1-10. 지역 네트워크 연계성	4	
II.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II-1. 장애인의 선호도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개인별 지원(소개)	35	
	II-1-1. 개인별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관계 형성 노력	7	
	II-1-2.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및 조사지원	7	
	II-1-3. 개인별이주지원의 안정적 운영	7	
	II-1-4. 선호도와 안전성 등을 반영한 주거환경개선	7	
	II-1-5.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 및 지역생활 유지	7	
	II-2. 사업 참여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소개	10	
III. 사업운영의 충실성 및 적정성	III. 사업운영의 충실성 및 적정성(소개)	15	
	III-1. 사업 추진 정도 및 운영 실적	5	
	III-2. 예산 사용 적정성 및 관리의 충실성(개인정보보호 등)	5	
	III-3. 사업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시행 여부	5	
IV. 가산점	IV. 가산점(소개)	+10	
	IV-1. 별도의 자체 예산 확보 및 집행	3	
	IV-2. 별도의 조직 및 행정지원 사항	3	
	IV-3. 민원 해결 및 시범사업을 위한 적극행정 노력	2	
	IV-4. 평가 준비의 성실성	2	

서식31 시범사업 세부 이행 계획서

I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
-
*

☐ 기 추진 중인 자립지원 현황

○
-
*

☐ 시범사업 지원인력 현황

○ 총괄

(‘24.1.1. 기준)

구 분	직급	인원	직급	인원	비고
지자체					
수행기관					

☐ 조례 및 기본계획

○

☐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관련 단체 등 현황

○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그룹홈, 단기 등 포함)

시설명	대표자 (임기)	정원 (현원)	주요 기능	설립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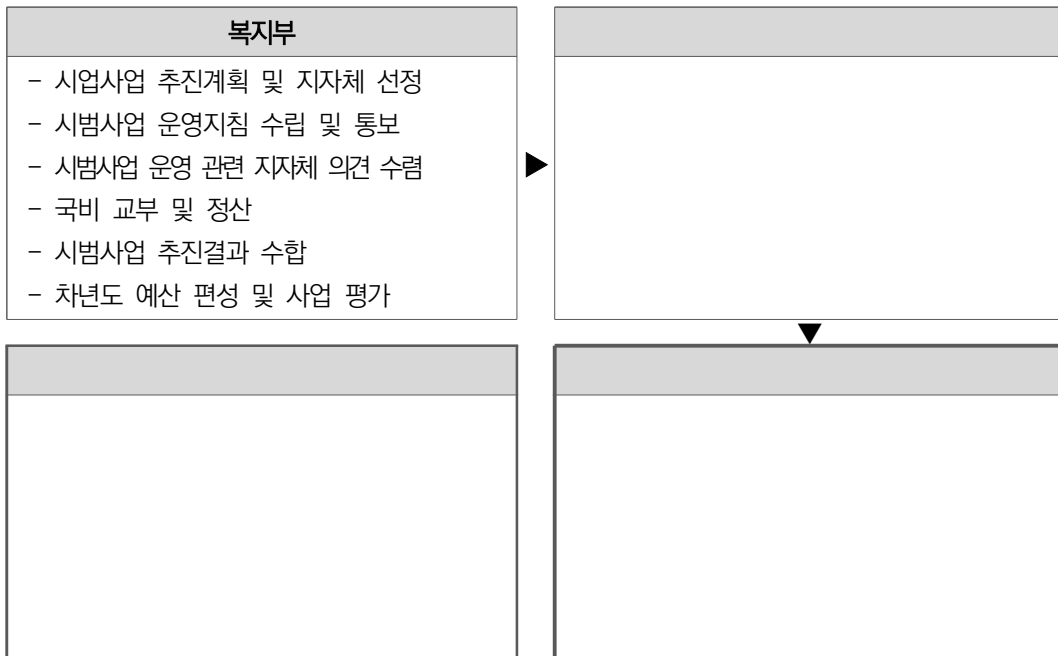
○ 관련 단체 등

단체명	대표자(임기)	주요 기능	설립일자

□ 사업운영 체계

- 운영 모형 : 지자체 주도형, 민관협력형(통합, 분리) 중 택1

〈운영체계 흐름도〉



○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직위)	성명	장애유무	자격기준	비고
위원장			유 (지체)	학계 전문가	
위원				거주시설 대표	민간
			유 (지체)	IL센터 대표	민간
				공무원	공무원

Ⅱ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1 2023년 주요 성과

□

○

—

*

2 2024년 추진방안

□ 목표량, 주거확보방안, 대상자 서비스 지원 등 방안 반드시 포함

○ 대상자 발굴

— 자립조사, 시설 및 보호자 간담회 등

*

○ 자립지원 전담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

— 채용 및 배치 등, 야간 대응 등

*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분기별 추진 등

*

○ 자립조사 및 단기체험등의 대상자 발굴

— 지역사회 내 홍보, 시설 협조, 단기체험 운영 등

*

○ 주택 확보 계획 및 활용방안

- LH지역본부, 지역공사 간 협업 계획 및 주택 확보 목표량, 확보된 주택 수량 및 내용(주소, 전용면적, 편의시설, 방 개수, 커뮤니티실, 체험주택 등 용도)

*

○ 거주시설 등 네트워크

- 거주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협업체계, 정보제공 등

*

○ 서비스 지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시설 연계, 직업상담 및 교육,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연계, 활동지원 등

*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연계

- 야간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 소방서·경찰서 등 지역 기관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

○ 기타 - 지역별 추가 지원 등

- 활동지원 추가지원 00시간, 자립정착금 00백만원 등

*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량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총계	국비	지방비	비고
1차년('22)				
2차년('23)				
3차년('24)				

□ 월별 추진계획

일정	구 분	추진계획
1월		
2월		

□ 사업 일정

구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 지원체계 조성	시범사업수행(제공) 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 (市)	● (區)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계획							● (民)	● (民)	● (民)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계획							●					
나. 홍보 및 정보 제공	홍보 계획 및 정보제공							●	●	●	●	●	●
다. 자립지원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 계획								●	●	●		
	단기체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자립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區)	● (區)	● (區)	● (區)	● (區)	● (區)
라. 개별 이주 및 전환 지원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	●	●	●	●

구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택 확보계획 확보 방안					● (市)	● (市)	● (區)	● (區)				
마. 개별자립 지원	대상자 개별 자립 지원서비스 지원 계획								●	●	●	●	●
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자체 성과평가 계획	시범사업 모니터링 계획 및 자체 성과 평가 계획									●	●	●	●

IV 예산 현황

□ 전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 입				세 출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 계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 세부 산출 내역

구 분	지출비목	1차년도	산출근거 (※ 예산집행기준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금액(천원)	
국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계		
지방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계		
합	계		

서식32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024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 출 기 관	
제출기관	○○시·도
담당부서	○○실·국 ○○과
담당자	○○○(직급, 연락처: , E-mail:)
수 행 기 관	
수행기관	○○시·군·구
담당부서	○○실·국 ○○과
담당자	○○○(직급, 연락처: , E-mail:)

○ 사업기간 : 2024. ○○. ○○ ~ 2024. 12. 31.

○ 사업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국비						
시·군·구						
자부담						

2024년 0월 00일

○○도지사·○○시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①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② 사업 정산보고서 1부(회계증빙서류 각 1부 포함)
- ③ 현황조사 1부

1	사업 결과보고서
---	----------

1 사업개요(요약)

사업자	○○○○○○(대표자 : ○○○)		
사업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4. ○○. ○○ ~ 2024. 12. 31.		
사업비 (계획액)	총 천원	국비	천원 (%)
		시·군·구비	천원 (%)
		자부담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 - -		
추진내용 및 주요결과	○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대상, 추진결과(계량화) 등		
주요성과	○ (사업이 국가, 기업,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추진 미흡사유 및 개선사항	○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 업 계 획	추진결과	비고
월	○ ○	○ ○	

※ 사업계획과 추진결과를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 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 계획과 추진결과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비고란 사유를 작성합니다.

3 세부사업 추진성과

세부사업	진행내용 및 주요결과	추진성과
	○ 진행일정: ○ 진행방법: ○ 주요결과: *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계량화 한 결과 작성	○ ○
	○ 진행일정: ○ 진행방법: ○ 주요결과:	○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 정산보고서

①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국비						
시·군·구						
자부담						

② 세부 집행내역

예산비목	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고 (잔액발생 사유)
합 계						
인건비	소 계					
	급여					
	제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등 수당별로)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소 계					
	회의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					
사업비	소 계					
	활동지원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기타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③ 계획 대비 보조금 사용내역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계						

○ 운영비 :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계						

○ 사업비 : 활동지원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계						

○ 사업비 : 주거환경개선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계						

*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역 위주로 작성

○ 사업비 : 보조기기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보조기기명					
계						

○ 사업비 : 건강검진비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계						

○ 사업비 : 자립체험과정 지원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계						

○ 사업비 : 개별전환지원, 자립지원위원회, 개별자립지원, 모니터링 등

(단위 : 원)

지출 일자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지급방법	재원
			산출기초	집행액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자료 : ①현금출납부, ②은행입출금 내역서, ③세입세출결산서(재원구분), ④세목별 총계정 원장, ⑤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한 스캔본), ⑥비품관리대장(자산관리대장, 원본대조필 날인한 스캔본)

4 보조금 변경 사용내역

(단위 : 원)

세부 내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사유	비고

※ 발생사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5 비품구입 및 자산취득 내역

(단위 : 원)

연번	내용	예산비목	구입 일자	수량	구매처	구매방식	금액	구입사유 및 배치장소	비고
예시	데스크탑	자산취득비	23.0.0.	5	(주)이룸	나라장터 공개입찰	4,000,000	전담인력 업무용, 사무실	

3 현황조사

※ 엑셀형식으로

- 자립조사, 자립조사원, 대상자 발굴, 자립지원위원회, 자립체험과정 지원, 홍보, 지역 사회 정착, 지도점검 시행여부 등의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

부록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 3. 14.〉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 ②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11. 3. 30.]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4. 11. 4., 2016.

12. 30., 2017. 3. 27., 2018. 6. 19., 2018. 12. 31., 2021. 6. 29.)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8. 6. 19.>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7. 10. 31.>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본조신설 2012. 1. 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
 -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 및 이 영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 ② 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1. 8. 31.>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6.>
-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2023. 9. 26.>

부록2 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신청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3. 3. 28.>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 2. 3., 2020. 12. 29.〉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12. 29.]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부록3 주거 관련 제도

▶ 임대주택

- (사업개요)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직접 건설 또는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 (주택유형)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건설 임대	통합공공 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35~90%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 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50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 ~ 80%	30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 ~ 80%	6년 ~ 20년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10년
매입 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 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50%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	6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생아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도심 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90%	6년
전 세 임 대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 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3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20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I	도심 내 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LH)

- 민간사업자가 LH공사가 제시하는 테마와 건축기준에 맞춰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여 준공 및 LH가 매입한 후, 테마에 맞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는 특화형 임대주택(특정테마형)

*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 ▶ 2023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 (규모) 20호 이상의 30호 이하의 집합화된 주택*
 -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단지형다세대·연립)
 - (전용면적*) 각 층에 청년 또는 일반유형 세대 50%와 장애인 세대 50%의 혼합세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36㎡ 이상으로 1.5룸 이상으로 계획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 기준 적용
 - (입주대상) 시범사업 선정 장애인
 - (커뮤니티시설) 세대당 1.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라운지 등의 다목적공간과 등 장애인 돌봄공간 등 특화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상주 지원인력을 위한 사무실 조성
 - 공사 계획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의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함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 | | | | |
|---------------------------------------|--|--------------------------------------|--|
| ❶ 청년 + 예술창업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 ❷ 신혼부부 + 공동육아
(서울 중랑, 도란도란공동육아방) | ❸ 청년 + 귀농귀촌
(경남 함양, 아이토피아) | ❹ 장애인 + 자립지원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
|---------------------------------------|--|--------------------------------------|--|



- 신청 후 입주까지 2~3년 소요, 중·장기적인 주택 확보방안으로 활용

* (사례) 사회복지법인인 LH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재활병원, 재활체육센터 등 장애인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약 25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주거급여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주거급여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 주거급여 지원절차



○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임차가구	자가 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지원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www.koddi.or.kr)